

미래를 바꾸는 힘! **고양**

차 례

조 례

고양시 조례 제2694호	고양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1
고양시 조례 제2695호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3
고양시 조례 제2696호	고양시 시청·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8
고양시 조례 제2697호	고양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10
고양시 조례 제2698호	고양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	13
고양시 조례 제2699호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16
고양시 조례 제2700호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18
고양시 조례 제2701호	고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21
고양시 조례 제2702호	고양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28
고양시 조례 제2703호	고양시 건설공사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48
고양시 조례 제2704호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53
고양시 조례 제2705호	고양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60
고양시 조례 제2706호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63
고양시 조례 제2707호	고양시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66

차 례

고양시 조례 제2708호	고양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69
고양시 조례 제2709호	고양시 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72
고양시 조례 제2710호	고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75
고양시 조례 제2711호	고양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78
고양시 조례 제2712호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81
고양시 조례 제2713호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84
고양시 조례 제2714호	고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87
고양시 조례 제2715호	고양시 도시개발 조례 전부개정조례	90
고양시 조례 제2716호	고양시 도시계획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98
고양시 조례 제2717호	고양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101
고양시 조례 제2718호	고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04
고양시 조례 제2719호	고양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07
고양시 조례 제2720호	고양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110
고양시 조례 제2721호	고양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114
고양시 조례 제2722호	고양시 농업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16
고양시 조례 제2723호	고양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119
고양시 조례 제2724호	고양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22
고양시 조례 제2725호	고양시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25
고양시 조례 제2726호	고양시 공유임야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129
고양시 조례 제2727호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	132

차 례

고양시 조례 제2728호	고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140
고양시 조례 제2729호	고양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44
고양시 조례 제2730호	고양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146
고양시 조례 제2731호	고양시 장애인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149
고양시 조례 제2732호	고양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152
고양시 조례 제2733호	고양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159
고양시 조례 제2734호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65
고양시 조례 제2735호	고양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171
고양시 조례 제2736호	고양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74
고양시 조례 제2737호	고양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176
고양시 조례 제2738호	고양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79
고양시 조례 제2739호	고양시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82
고양시 조례 제2740호	고양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184
고양시 조례 제2741호	고양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188
고양시 조례 제2742호	고양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194
고양시 조례 제2743호	고양시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	199
고양시 조례 제2744호	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203
고양시 조례 제2745호	고양시 저소득층 성인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205
고양시 조례 제2746호	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210

차 례

규 칙

고양시 규칙 제1174호	고양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212
고양시 규칙 제1175호	고양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폐지규칙	223

훈 령

고양시 훈령 제412호	고양시 노점판매대 운영 규정 전부개정훈령	225
-----------------	------------------------	-----

고 시

고양시 고시 제2023-416호	도시계획시설(중로1-1호선 외 1개소] 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242
고양시 고시 제2023-417호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3호) 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244
고양시 고시 제2023-418호	「성석동 제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지구 변경 고시	247
고양시 고시 제2023-420호	도로명주소 고시	248

공 고

고양시 공고 제2023-2796호	고양 도시관리계획(삼송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 공고	249
-----------------------	-------------------------------------	-----

제27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3년 11월 17일

고양시 조례 제2694호

고양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고양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예산담당관
입안자	과장 성명	예산담당관 신영호
	팀장 성명	경영평가팀장 유병웅
	담당자 성명·전화	장경옥 031-8075-2357

고양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지방공기업 적용 대상사업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해당 조례의 실효성이 없으며,
- 고양시 직영기업(상하수도) 및 공사의 사업범위는 개별 조례에 규정하고 있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이 조례를 폐지함.

제27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3년 11월 17일

고양시 조례 제2695호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얻도록”을 “받도록”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이의 대비를”을 “이에 대비하기”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해야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특별휴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고, 출산 전까지 합산하여 5일의 모성보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③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자녀 1명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사용일수 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하되,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봄

④ 4세 이하(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간 5일의 범위에서 육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5일의 육아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에 참석하는 경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받

을 수 없다.

⑥ 시장은 공무원이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격무로 고생하는 공무원을 위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포상휴가 결정을 위한 세부기준 등은 자체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⑦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재직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의 재직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20일, 30년 이상 재직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2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계산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을 따르며,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실시해야 한다.

1. 장기재직휴가는 분할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재직기간 도래(到來) 전에는 사용할 수 없음
2. 장기재직휴가는 소급 및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음

⑧ 자녀의 군 입영이 확정된 경우 군 입영 행사와 훈련소 수료식에 참석하는 공무원은 각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⑨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 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최소 근무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장은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육아시간 또는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제23조 앞의 “제3장 보칙”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행정지원과
입 안 자	과 장 성 명	행정지원과장 한 철 희
	팀 장 성 명	행정지원팀장 정 진 섭
	담 당 자 성명·전화	김 윤 경 031-8075-2173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안이유

-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 수당 대신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제17조의2).
-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제27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시청·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고양시장이동환인

2023년 11월 17일

고양시 조례 제2696호

고양시 시청·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양시 시청·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효자동행정복지센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고양시 덕양구 오부자로 3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주민자치과
입안자	과장명	주민자치과장 신 건 국
	팀장명	자치행정팀장 김 복 희
	담당자 성명·전화	오 민 욱 031-8075-2484

고양시 시청·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안이유

- 효자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완공으로 청사를 임시청사에서 지축지구로 이전함에 따라 효자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효자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고양시 덕양구 오부자로 32” 로 변경함(별표).

제27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3년 11월 17일

고양시 조례 제2697호

고양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양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중 “2023년”을 “2028년”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7조제2항 중 “증빙”을 “증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1항 중 “이내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기능을 대신한다”를 “이내로 구성한다”로 한다.

제11조제3호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개 의”를 “개 의(開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긴급을 요하는”을 “긴급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일자리정책과
입 안 자	과 장 성 명	일자리정책과장 왕 연 우
	팀 장 성 명	일자리정책팀장 김 미 애
	담 당 자 성명·전화	박 연 선 031-8075-3702

고양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안이유

- 일자리기금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기금 사업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고양시 일자리기금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제3조).
-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제27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3년 11월 17일

고양시 조례 제2698호

고양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양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고양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고양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운영에 관하여”를 “운용에”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따라”를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대하여는 「지방회계법」중”을 “관하여 「지방회계법」 중”으로, “사무는”을 각각 “규정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수납하고자”를 “수납하려고”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아니하는”을 “않은”으로,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을 “않은 사람에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아니하는”을 “않은”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결손처분)”을 “(시효완성정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결손처분”을 “시효완성정리”로 한다.

제9조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10조 중 “2023년”을 “2028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복지정책과
입 안 자	과 장 성 명	복지정책과장 유 선 준
	팀 장 성 명	생활보장팀장 조 경 임
	담 당 자 성명·전화	이 주 현 031-8075-3256

고양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안이유

- 「의료급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경기도로부터 교부받은 기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고양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제명을 「고양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함.
- 나. 고양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제10조).
-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제27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3년 11월 17일

고양시 조례 제2699호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3항 본문 중 “2024년”을 “2029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여성가족과
입 안 자	과장 성명	여성가족과장 이 경 희
	팀장 성명	여성정책팀장 서 정 미
	담당자 성명·전화	이 수 정 031-8075-3332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안이유

- 고양시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이 2024년 3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41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고양시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2029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함(제41조제3항).

제27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3년 11월 17일

고양시 조례 제2700호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로, “4조”를 “제4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요되는”을 “드는”으로, “일체의”를 “모든”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일체의”를 “모든”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7항”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8항 및 제9항”으로 한다.

제7조 및 제8조 중 “아니한”을 각각 “않은”으로 한다.

제9조 중 “2023년” 을 “2028년”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자원순환과
입 안 자	과 성 장 명	자원순환과장 안 명 렬
	팀 성 장 명	자원순환시설관리팀 김 남 훈
	담 당 자 성명·전화	신 은 총 031-8075-2691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안이유

-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조성된 재원(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제9조).
-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제27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3년 11월 17일

고양시 조례 제2701호

고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고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를 “고양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로 한다.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학습비의 징수 등) ① 시장은 시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과정 등에 참여하는 학습자(이하 “학습자”라 한다)에게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학습비(평생교육과정 참여에 따른 수강료 등을 말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학습비를 징수하는 경우 고양시 평생학습포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징수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과정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부 과정을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학습비의 감경) ① 시장은 학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습비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인 사람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본인 또는 그 유족
6.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본인 또는 그 유족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본인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학습비를 감경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학습비 감경 신청서와 관련 증명서류를 접수 마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고양시 평생학습포털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제18조(학습비의 반환) ① 시장은 학습비 반환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법 제2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학습비를 반환해야 한다.

②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하고 학습비를 반환받으려고 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학습비 반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고양시 평생학습포털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제20조의2를 삭제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평생교육과
입 안 자	과 성 명	평생교육과장 김 보 경
	팀 성 명	평생교육정책팀장 장 재 영
	담 당 자 성명·전화	이 민 혜 031-8075-2294

[별표 3]

학습비 기준(제16조 관련)

구 분	기 준	학 습 비	세 부 사 항
5회 이하	1강좌	15,000원 이내	○ 1회는 45분 이상으로 함. ○ 재료비 등은 학습자가 별도로 부담함.
6회 이상~10회 이하	1강좌	30,000원 이내	
10회 초과	1강좌	60,000원 이내	

비고) 특별강좌 등 특화과정 개설 시 별도 책정할 수 있음.

학습비 감경 신청서

학 습 자	강 좌 명		강의기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학 습 비	금	원정 (₩)		
감경사유				

위와 같이 「고양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7조에 따라 학습비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신분증 등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2. 장애인증명서 3. 한부모가족 증명서 4. 주민등록표등본·초본 5. 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 * 위의 서류 중 신청인의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학습비 반환 신청서

학 습 자	강 좌 명			강의기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학 습 비	금 원정 (₩)				
반환금액	금 원정 (₩)	구분	학습비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① 수업시작 전 ②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③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 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학습비 징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① 수업시작 전 ② 수업시작 이후	
실제납부 학습비	금 원정 (₩)				
반환신청 사유					

위와 같이 「고양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8조에 따라 학습비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

고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안이유

- 우리시의 평생교육과정에 대한 학습비 징수 기준 및 반환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제명을 「고양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로 변경함.
- 나. 학습비의 구체적인 금액 기준을 마련하고 학습비 감경, 반환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및 별표 3).
- 다. 학습비 감경 신청 및 반환 신청에 관한 서식을 신설함(별지 제3호서식 및 제4호서식).
-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제27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3년 11월 17일

고양시 조례 제2702호

고양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고양시민의 문화 체험·교육·관람 및 지역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등 문화 복지의 향상과 효율적인 지원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양시 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사용”이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문화시설을 대관하여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11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특별 부대시설”이란 기존 시설 외에 공연 또는 행사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조명, 음향, 무대장치 등의 특수설비를 말한다.

제3조(문화시설의 명칭 및 위치)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문화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사업 및 기능) 제3조에 따른 문화시설에서 수행하는 사업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양시 어린이박물관

- 가. 영유아와 아동에 대한 창의적인 체험학습 기회 제공
- 나. 건강한 가족문화 활성화 및 지역사회 문화예술 환경 향상
- 다. 그 밖에 박물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고양영상미디어센터

- 가. 각종 미디어 교육 및 체험
- 나. 무료영화 상영 등 영화관 운영
- 다. 미디어 관련 장비, 시설의 대여 및 대관
- 라. 그 밖에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고양생활문화센터

- 가. 생활문화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과 지원
- 나. 각종 생활문화예술 교육, 전시 및 행사
- 다.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의 관리 및 운영
-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고양시 음악창작소

- 가. 지역 음악인 창작 및 공연활동 지원
- 나. 각종 음악 관련 교육 및 체험
- 다.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의 관리 및 운영
-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고양시 문예회관

- 가.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복지향상 지원
- 나.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의 관리 및 운영
-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 고양문화의집

- 가. 강좌 운영 및 지원
- 나. 교육 관련 행사 및 체험
- 다.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의 관리 및 운영
-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7. 고양시 예술창작공간

- 가. 창작공간 운영 및 창작활동 지원에 관한 사업
- 나. 전시, 학술, 교육 등 과정 운영
- 다.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및 상호 사회 관계망 구축
-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장 문화시설의 운영

제5조(운영의 위탁 등) ① 시장은 문화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시 출자·출연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문화시설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서면으로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의 목적
2. 수탁자의 명칭 및 주소
3. 위탁 기간 및 위탁 재산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수탁자는 위탁받은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2.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고 위탁운영 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 및 시설물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

3.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으며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4.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신축·증축, 내부시설 변동 및 증설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설 훼손 등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의 책임을 진다.
5.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7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협약 사항과 운영 목적을 위반한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문화시설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4. 그 밖에 수탁자가 공익상 또는 재산관리상의 이유로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시장에게 반환해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한 소유권, 연고권 등 그 밖의 모든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8조(운영지원) 시장은 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해당 시설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수탁자를 지도 및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거나 운영이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탁자에게 경고, 시정명령, 예산 지원의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자체 운영규정) 수탁자는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장 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

제11조(사용허가) ① 시장은 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문화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기존의 시설 외에 특별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또는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중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시설운영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사용료의 납부) ① 사용자는 사용일 전까지 미리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문화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제14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2.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인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5. 65세 이상인 사람
 6. 18세 이하의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대시설 사용료는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 ④ 사용료 감면에 대한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사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전액 반환
 - 가. 사용자가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 나.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 다. 관리자의 귀책 또는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2. 90퍼센트 반환: 사용자가 사용 예정일 1일 전까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 ② 사용료의 반환 방법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양시 문예회관의 경우는 별도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제16조(입장료 등) ① 문화시설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고양시 어린이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체험전시물 이용 및 체험과정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미리 입장료를 납부해야 한다.

-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어린이박물관의 입장료 및 감면 대상, 반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7조(수강료 등) ① 문화시설에서 운영하는 강좌를 수강하려는 사람은 수강 신청 시 수강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 및 반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 수강료의 반환 방법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입장금지 및 제한) ① 시장은 시설 내 질서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흡연 또는 음주를 하는 행위
2.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하는 행위
3.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행위. 다만, 시각장애인과 동반하는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2항의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4. 허가되지 않은 시설물을 만지는 행위
5. 고성, 소란행위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또는 감염 의심 증상의 발현으로 다른 관람객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입장하는 행위
7. 그 밖에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이용자의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해 시장이 제한하는 행위

② 시장은 시설의 쾌적한 관람환경 유지와 이용자 안전을 위하여 일일 입장 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9조(사용자의 원상복구 등) ① 사용자는 사용 기간이 끝나거나 사용을 중단한 때에는 시설에 설치한 시설물을 즉시 철거하고 원래 상태로 돌려놓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파손, 멸실, 훼손했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 또는 복구해야 한다.

③ 사용자가 철거 및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장이 철거 및 원상복구하고 필요한 비용을 사용자에게 청구한다.

제20조(권리의 양도 등의 금지) 사용자는 시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

제4장 박물관 운영위원회

제21조(박물관장의 임명) 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시장이 임명 하되,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제2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에 따라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고양시 어린이박물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박물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2. 박물관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3. 박물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
4. 다른 박물관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2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관장
2. 박물관 업무 담당 국장
3. 박물관 업무 담당 과장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관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아동, 교육, 건축, 전시, 역사 등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2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5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박물관 업무 담당직원 중에서 관장이 지명한다.

제2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고양시 어린이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2. 고양영상미디어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3. 고양시 문예회관 사용 조례
4. 고양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고양시 어린이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고양영상미디어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고양시 문예회관 사용 조례」 및 「고양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행해진 사항허가 등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본다.

제4조(위탁운영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고양시 어

린이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고양영상미디어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고양시 문예회관 사용 조례」 및 「고양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시장이 위탁 운영했거나 위탁 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로 보며, 해당 계약에 따른 위탁기간은 각각 계속된다.

제5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고양시 어린이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고양시 어린이박물관 운영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고양시 어린이박물관 운영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고양시 어린이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되거나 임명된 고양시 어린이박물관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고양시 어린이박물관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임명된 것으로 본다.

소관부서		문화예술과
입안자	과장 성명	문화예술과장 서 은 원
	팀장 성명	문화시설팀장 김 경 희
	담당자 성명·전화	김 성 순 031-8075-3418

[별표 1]

문화시설의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명칭		위치	주요 시설
고양시 어린이박물관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26(화정동)	전시실, 교육실
고양영상미디어센터		고양시 덕양구 어울림로 33(성사동)	강의실, 스튜디오, 편집실, 영화관
고양생활문화센터	아람마당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86(마두동)	연습실, 다목적실
	호수마당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595(장항동)	
	어울림마당	고양시 덕양구 어울림로 33(성사동)	
고양시 음악창작소		고양시 덕양구 어울림로 33(성사동)	녹음실, 합주실
고양시 문예회관		고양시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공연장
고양문화의집		고양시 일산서구 산현로 99(탄현동)	강의실, 문화관람실
고양시 예술창작공간	해움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595(장항동)	창작공간, 교육공간, 전시공간
	새들	고양시 덕양구 신평길 217(신평동)	

[별표 2]

문화시설의 사용료(제13조 관련)

※ 각 시설의 사용범위는 해당되는 부대시설(무대장치, 조명, 음향, 냉난방 시설 등)을 포함한다.

1. 고양시 어린이박물관

층수	시설명	사용료(VAT 별도)		비고
1층	다목적실	50,000원		■ 프로젝터 ■ 좌석 ■ 일 대관료
	기획전시실	1,000원/㎡		■ 일 대관료
3층	체험교육실	1,000원/㎡		■ 프로젝터 ■ 좌석 ■ 일 대관료
	소강당	평일	80,000원	■ 무대/객석 144석 ■ 방송시설 ■ 1회 4시간 기준 ■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적용 ■ 초과 시간당 - 평일 : 20,000원 - 주말, 공휴일: 25,000원 ■ 대관료 감경 - 월 7회 이상 ~ 14회 미만: 20퍼센트 감경 - 월 14회 이상: 40퍼센트 감경
		주말, 공휴일	100,000원	

※ 박물관 휴관일에는 대관을 하지 않는다.

2. 고양영상미디어센터

시설명	기준	사용료(VAT포함)	비고
전문 편집실 (Window 기반)	1시간	3,000원	
전문 편집실 (Mac 기반)	1시간	3,000원	
비디오 스튜디오	1시간	10,000원	
오디오 스튜디오	1시간	10,000원	
어울림 영화관	1시간	30,000원	

※ 장비 사용료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양영상미디어센터 운영내규로 정한다.

3. 고양생활문화센터

구분 면적	사용료 (VAT포함)	시설명	비고
15㎡미만	5,000원	아람(개인연습실1,2)	· 기본 3시간 · 1시간 초과 시 기본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15㎡~50㎡미만	10,000원	아람(밴드실), 호수(모임실1,2), 어울림(미술실 1,2)	
50㎡~100㎡미만	15,000원	아람(작은연습실1,2 무용실), 어울림(동아리실 1,2,3,4)	
100㎡~150㎡미만	20,000원	아람(다목적실), 어울림(연습실 1,2,3)	
150㎡~200㎡미만	25,000원	아람(연습실), 호수(다목적실)	
200㎡초과	50,000원	어울림(마주침공간)	

4. 고양시 음악창작소

시설명	기준	사용료(VAT 포함)	비고
녹음실 (A스튜디오)	1시간	50,000원	엔지니어 포함
	1시간	30,000원	엔지니어 미포함
합주실 (B스튜디오)	1시간	10,000원	
소형연습실 (B스튜디오)	1시간	5,000원	

5. 고양시 문예회관

○ 공연장 사용료

사용료 (공연장)	평일			휴일			비고
	오전 (09:00 ~ 12:00)	오후 (13:00 ~ 17:00)	야간 (18:00 ~ 22:00)	오전 (09:00 ~ 12:00)	오후 (13:00 ~ 17:00)	야간 (18:00 ~ 22:00)	
	70,000원	80,000원	90,000원	80,000원	90,000원	100,000원	
1일(09:00~22:00)	200,000원			250,000원			*VAT별도

1. 공연연습 사용 시에는 해당요금의 50퍼센트를 적용한다.

2. 사용시간이 구분에 미달할 때의 사용료는 전액 징수한다.

○ 부대시설 사용료

시설명		기준	사용료	비고
악기	가. 그랜드피아노 (삼익 프렐뮈어 그랜드 피아노 JP-208)	1회	10,000원	◦피아노 조율은 사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유선마이크 1개 추가 시 2,000원 징수 ◦무선마이크 1개 추가 시 3,000원 징수 ◦녹음 시 저장장치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당일 행사를 위한 분장실 및 출연자대기실 사용 시 사용료를 받지 않는다.
음향	가. 유선마이크	1회 2개	4,000원	
	나. 무선마이크	1회 2개	6,000원	
	다. 녹음료	1회 1개	5,000원	
조명	가. 종합조명	1회	20,000원	※ 공연장 진행물품(의자, 테이블, 보면대, 단상 등 하나라도 사용 시 신청) ※ 현수막 사이즈(10M * 0.9M) ※ 외부현수막 사이즈(2.3M * 8.8M) - 제작·설치·철거 사용자 부담 ※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4시간 이내) 를 말한다.
영사	가. 프로젝터	1회	10,000원	
그 밖의 사항	가. 공연장 진행물품	1식1회	5,000원	
	나. 현수막 게첨료	1건	5,000원	
	다. 외부현수막 게첨료	1건(2주)	20,000원	
	라. 영화, 비디오촬영	1건	30,000원	
	마. 라디오, TV중개료	1회	5,000원	
	바. 이동형무대(접이식)	1회	10,000원	

○ 냉난방 사용료

요금구분	기준	비고
냉난방 사용료	시간당	◦ 냉방은 7월부터 9월까지 난방은 12월부터 3월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기온의 급변화 시는 예외로 한다. ◦ 냉난방 사용료 = 동력(kW) × 전력단가(원) × 사용시간 ※ 전력단가는 한국전력공사의 고시단가로 책정한다.

6. 고양문화의집

○ 사용료

구분	기준	사용료(VAT포함)	비고
문화관람실	10:00~18:00	15,000원/시간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 ○토, 일요일은 기준요액의 20퍼센트 가산
	18:00~21:00	20,000원/시간	
냉난방비	시간당		○냉, 난방사용료 : 동력(kw)×전력단가(원)×사용시간

○ 부대시설 사용료

구분	기준	사용료(VAT포함)	비고
○ 피아노	1회	20,000원	○피아노 조율비는 사용자 부담 ○유선마이크 추가 시 1개당 2,000원
○ 빔프로젝트	1회	10,000원	
○ 마이크(유선)	기본2개	10,000원	
○ 마이크(무선)	1개	10,000원	
○ 음향시설	1회	10,000원	

7. 고양시 예술창작공간

구분	내용	비고
창작공간 사용료	○ 창작공간에 입주한 자에 대하여 창작공간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 다만, 입주기간에 발생하는 실비(전기료, 수도료, 전화료, 냉난방비 등)는 입주한 자가 부담한다.	

※ 사용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양시 예술창작공간 운영내규로 정한다.

[별표 3]

어린이박물관의 입장료 및 감면 대상, 반환 기준(제16조 관련)

1. 입장료 및 감면 대상

구분		금액		비고
		개인	단체 (20명 이상)	
영아·유아	3세(36개월) 미만	무료	무료	관련 증명서 지참
일반	3세(36개월) 이상	5,000원	3,500원	3세~64세
입장료 면제 대상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이 경우,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따른 등록포로 및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12. 단체관람(20명 이상) 인솔교사 13. 교육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교원으로서 학교장의 협조요청이 있는 사람 14. 65세 이상인 사람 1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무료	무료	관련 증명서 지참
고양시민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	3,500원	3,500원	관련 증명서 지참

※ 입장료 감면 대상자는 관련 증명서(신분증, 주민등록표등본, 복지카드 등)를 제시해야 한다.

※ 박물관 및 미술관, 어린이 놀이·교육시설, 박람회 등과 제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입장료의 30퍼센트까지 감경할 수 있다.

※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경기도 문화의 날에 입장료를 30퍼센트까지 감경할 수 있다.

2. 반환 기준

구분	반환 기준	반환 금액
개인 및 단체	○ 예매한 회차 입장시간 전까지 ○ 천재지변 등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정에 따라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 그 밖에 박물관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한 경우	전액

[별표 4]

수강료 및 반환 기준(제17조 관련)

1. 고양시 어린이박물관

구분	개인	단체(20명이상)	비고
수강료	30,000원 이하	30퍼센트 감경	○ 1회 기준 ○ 각 프로그램별 필요한 교재비, 재료비 포함 ※ 무료강좌의 경우 재료비는 별도 수납 가능

※ 강의 내용과 수준에 따라 개별 강의의 수강료를 산정함.

2. 고양영상미디어센터

강좌명	기준	금액	비고
전문미디어 교육 (파이널컷, 모션, 프리미어, 포토샵 등)	1시간	3,000원~10,000원	
미디어인문학 교육 (영화감상, 비평 등)	1시간	2,000원~8,000원	
IT 교육 (맥OSX, 스마트폰 활용 등)	1시간	2,000원~8,000원	
세대공감 교육 (어린이, 청소년 UCC제작, 주부 아이 성장 앨범 만들기, 실버 영화 속 추억여행 등)	1시간	2,000원~8,000원	
공동체 교육 (단체 미디어 교육, 스튜디오 체험 등)	1시간	2,000원~10,000원	

※ 강의 내용과 수준에 따라 개별 강의의 수강료를 산정함.

3. 고양문화의집

○ 수강료

구분	기준	금액	비고
정규프로그램	1명 1개월	15,000원 ~ 25,000원	○ 교재비, 재료비는 본인 부담 ○ 교육기간이 10일 이상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4. 수강료 반환 기준

구분	반환 기준	반환 금액
1. 천재지변 등 피할 수 없는 사정에 따라 수강이 불가능한 경우 2. 시설의 사정으로 수강이 불가하게 된 경우 3. 수강자의 사정으로 수강을 취소하는 경우	○수업 개시 전	○ 전액 환불
	○수업 개시 후	○ 교육된 수업 일수를 제외하고 반환

고양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안이유

- 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통합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문화시설 운영 기준의 통일성을 제고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고양시 문화시설의 명칭 및 기능에 대해 규정함(제3조 및 제4조).
- 나. 문화시설 위탁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부터 제10조까지).
- 다. 문화시설 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에 대해 규정함(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 라. 입장료 및 수강료에 대하여 규정함(제16조 및 제17조).
- 마. 박물관 운영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제21조부터 제27조까지).

제27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건설공사장 영상정보처리 기기 설치 및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고양시장이 동 환 인

2023년 11월 17일

고양시 조례 제2703호

고양시 건설공사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건설공사 사업장 내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및 스마트 안전관리를 도모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고 공사장의 건설공사 사고 예방 및 효율적인 안전관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를 말한다.
2. “건설사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주택건설등록업자”란 「주택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4. “공공공사”란 국가나 정부 기관이 건축주가 되어 직접 시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로 시행하는 공공 토목·건축 공사를 말한다.
5. “스마트 안전장비”란 「전파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따른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을 관리하는 장비 또는 그 장비를 구축·운영하는 체계 또는 시스템을 말한다.

다.

6. “정보주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처리되는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7.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설공사의 안전성·경제성 확보를 위해 융·복합 건설기술, 무선통신 장치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건설공사 관계자의 책무)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및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설안전, 화재예방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매일 자체안전점검을 하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해야 한다.

③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및 스마트 안전장비를 설치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등 법령을 준수하여 설치 및 운영해야 한다.

제5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제62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또는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와 계약금액 10억원 이상의 공공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인허가 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밖의 규모 이하의 건설공사에도 적용할 수 있으며, 도로, 수도 등과 유사한 선형시설 및 산발적 공사현장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및 스마트 안전장비의 적용이 어려운 공사는 제외한다.

제6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스마트 안전장비의 활용) ① 시장은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노사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설치해야 한다.

③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및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건설공사의 규모 및 특성,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7조에 따른 스마트 안전장비를 활용할 수 있다.

제7조(스마트 안전장비) 스마트 안전장비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설기계 장비의 접근 위험 경고장치 및 자동화재 감지센서
2. 스마트 안전관제시스템
3.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안전관리시스템
4. 가설구조물, 지하구조물 및 지반 등의 붕괴 방지를 위한 스마트 계측기
5. 그 밖에 융·복합 건설기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장비

제8조(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 ① 시장은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기반 마련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방안 마련
2.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장비 기술 적용·분석
3. 관내 건설공사 사고 발생 현황 및 실태 분석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시장은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 전문기관, 단체 등에 자문하거나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건설공사장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및 스마트 안전관리체계의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 등 건설공사 관계자에게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시민안전담당관
입안자	담당관 성명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팀장 성명	건설안전팀장 정선화
	담당자 성명·전화	이승호 031-8075-3053

고양시 건설공사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안이유

- 국토교통부 지침 및 관계 법령에 따라 300억원 이상의 공공공사는 스마트 안전장비의 도입을 의무화하였으며, 민간공사도 스마트 안전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발주자가 비용을 지불하도록 안전관리비 사용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 대부분의 중·소규모 건설공사장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및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의 도입이 미흡한 실정임.
- 이에 우리시는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건설공사장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및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독려 및 지원하여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체계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함(제1조 및 제2조).
- 나. 조례의 적용 범위를 규정함(제3조).
- 다. 시장 및 건설공사 관계자의 책무를 규정함(제4조 및 제5조).
- 라.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스마트 안전장비의 활용 및 구축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제6조, 제7조 및 제8조).
- 마. 스마트 안전관리체계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조사 및 교육 등에 대하여 규정함(제9조 및 제10조).

제27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3년 11월 17일

고양시 조례 제2704호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제2부시장”을 “제2부시장, 건축업무 담당 실장”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기능) ① 건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 제5조의5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2.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시장이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
 - 가. 영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 나. 영 제2조제17의2호에 따른 준다중이용 건축물(관광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에 한정한다)
 - 다.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상 공동주택 건축물
 - 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의 건축물
 - 1)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2)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용도로 사용하는 세대수 또는 실수의 합

계가 30 이상인 건축물

마.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바. 지하 3층 초과 또는 10미터 초과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 이 경우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사. 영 제27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공개공지의 설치로 법 제56조 및 제60조를 완화하여 적용받는 건축물

아.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하거나 「경관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고양시 경관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은 심의를 생략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위원회가 심의한 심의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영 제5조의5제2항에 따라 영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영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3.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의 변경

4. 대수선이나 건축물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용도변경

5. 건축물 외장의 기본 골격을 변경하지 않는 창호, 노대, 옥상난간 등의 경미한 변경

6.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원래 층수 이하로의 층수변경

나. 대지면적, 연면적, 세대수의 100분의 5 이하의 변경

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소위원회) ①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소위원회는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매회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소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여 구성한다. 다만, 건축위원회의 재심의인 경우 당초 심의에 참여했던 위원을 우선하여 구성한다.
-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업무 담당 실장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해당 심의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 ⑤ 소위원회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소위원회는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건축위원회가 인정하여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 ⑦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건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⑧ 소위원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준용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2조의2(전문위원회)** ①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건축계획·건축구조·건축설비·해체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전문위원회는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매회 5명 이상 15명 이하의 해당 분야 전문위원으로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여 구성한다.
 -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업무 담당 실장으로 하며,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해당 심의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 ⑤ 전문위원회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전문위원회는 제8조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2. 제8조제1항제2호바목에 따른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3. 다른 법령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중 전문분야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이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사항

⑦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⑧ 전문위원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준용한다.

제18조제1항 중 “담당국장” 을 “담당 실장” 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납부하여야” 를 “내야”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아니한다” 를 “않는다” 로 한다.

제27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5조제1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에 한정한다)

제3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1. 대지에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변(공개공지 한 면이 4분의 1 이상 접할 것)으로서 일반인의 접근(계단 이용은 제외한다)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 형태로 설치할 것. 다

만, 가장 넓은 도로변에 설치가 불합리한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2. 2개소 이내로 설치하되, 1개소의 면적이 최소 45제곱미터 이상일 것
3. 최소 폭은 5미터 이상일 것
4. 옥외 공개공지 확보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에는 공개공지등 전체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유효높이는 6미터 이상일 것
5. 공개공지등은 지상에 설치할 것. 다만, 상부가 개방된 구조로 지하철 연결통로에 접하거나 다수 공중이 이용 가능한 공간인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계단을 이용해서 접근이 가능한 지하부분에 설치할 수 있다.
6. 조경시설, 조명시설, 벤치, 파고라, 분수대, 시계탑, 야외무대, 식수대, 조형물 등 미술장식품, 공중화장실 등의 시설물 중에서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할 것

제35조제5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건축기준 완화적용 시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 다만, 필로티 구조로 구획되거나 제3항제5호에 따라 지하에 설치된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2분의 1로 한정하여 산입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개공지등의 확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공개공지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 또는 용도변경 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또는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한 것에 대해서는

중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중전의 규정이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소관부서		건축정책과
입안자	과장 성명	건축정책과장 박 문 희
	팀장 성명	건축정책팀장 이 양 금
	담당자 성명·전화	공 지 은 031-8075-3158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안이유

-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 및 공개공지등의 설치기준을 정비하고, 상위법의 개정사항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건축물의 구조안전·기능·환경 및 미관 향상뿐만 아니라 공공적 가치 증대를 위하여 분양건축물 및 대규모건축물에 대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을 정비함(제8조제1항).
- 나. 건축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조항을 구분하여 규정함(제12조 및 제12조의2).
- 다.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건축사의 명부를 시·도지사가 작성·관리하도록 상위법이 개정되어 관련 조문을 삭제함(제27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 라. 쾌적한 도시환경 및 시민의 휴게공간 제공을 위해 조성되는 공개공지 등의 설치기준을 정비함(제35조제3항).

제27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3년 11월 17일

고양시 조례 제2705호

고양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양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행령 제88조”를 “시행령 제88조의2”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관할구역내”를 “관할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관할구역내”를 “관할구역 내”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7명”을 “10명”으로,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민간 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로 한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7조제1항 중 “관할구역내”를 “관할구역 내”로, “일체의”를 “모든”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때에”를 “때”로, “경우에 조사를”을 “경우 조사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토지정보과
입 안 자	과 장 성 명	토지정보과장 전 준 수
	팀 장 성 명	도로명주소팀장 이 경 수
	담 당 자 성명·전화	남 효 선 031-8075-3098

고양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안이유

- 상위법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고양시 지명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명확성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상위법에 따라 지명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제3조).
- 나. 지명위원회의 간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조문을 정비함.

제27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3년 11월 17일

고양시 조례 제2706호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아니할”을 “않을”로 한다.

제8조 중 “2023년”을 “2026년”으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경제자유구역추진과
입 안 자	과 성 명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 대 영
	팀 성 명	테크노밸리기반팀장 김 홍 윤
	담 당 자 성명·전화	박 정 희 031-8075-3227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안이유

- 조례 제정 시 2023년 준공예정이었으나 사업기간이 2026년까지 연장됨에 따라,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제8조).
-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제9조).

제27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3년 11월 17일

고양시 조례 제2707호

고양시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양시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운영을 기하기”를 “운용을”으로, “운영”을 “운용”으로 한다.

제2조 중 “부수되는”을 “따르는”으로 한다.

제3조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5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아니할 경우”를 “않을 때”로 한다.

제9조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10조 중 “2023년”을 “2028년”으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전략산업과
입 안 자	과 장 성 명	전략산업과장 김 형 기
	팀 장 성 명	킨텍스지원팀장 양 상 윤
	담 당 자 성명·전화	정 회 민 031-8075-3516

고양시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안이유

- 한국국제전시장 건립사업협약서 제1조제2항에 따라 한국국제전시장 건립사업은 전시장수요 재정사업 등을 고려하여 3단계로 분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사업 지속 수행을 위해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고양시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제10조).
-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제27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3년 11월 17일

고양시 조례 제2708호

고양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양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9조”를 “제49조 및 「주차장법」 제21조의2”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10퍼센트의 금액”으로 한다.

제7조 중 “2023년”을 “2028년”으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교통정책과
입 안 자	과 성 장 명	교통정책과 김 환 덕
	팀 성 장 명	교통정책팀장 김 태 균
	담 당 자 성명·전화	황 석 영 031-8075-2913

고양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안이유

- 고양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도시교통 사업의 원활한 운용과 효율적인 재원 관리를 위하여 고양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현재 교통사업특별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를 통합하여 운용하고 있어 관련 상위법을 추가로 인용함(제1조).
- 나. 고양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제7조).
-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제27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3년 11월 17일

고양시 조례 제2709호

고양시 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양시 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중 “소요되는”을 “드는”으로 한다.

제4조제2호 중 “수반되는”을 “따르는”으로 한다.

제8조 중 “2023년”을 “2028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교통정책과
입 안 자	과 장 성 명	교통정책과장 김 환 덕
	팀 장 성 명	철도계획팀장 한 상 선
	담 당 자 성명·전화	강 대 영 031-8075-2933

고양시 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안이유

- 고양시 철도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철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고양시 철도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제8조).
-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제27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3년 11월 17일

고양시 조례 제2710호

고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주택과장”을 “신도시정비과장”으로 한다.

제21조 중 “2023년”을 “2028년”으로 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신도시정비과
입 안 자	과 장 성 명	신도시정비과장 조 용 주
	팀 장 성 명	신도시지원팀장 견 달 수
	담 당 자 성명·전화	오 정 은 031-8075-3208

고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안이유

- 고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직개편으로 관련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정비함(제4조).
- 나. 고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제21조).
-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제27조).

제27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3년 11월 17일

고양시 조례 제2711호

고양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양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7호 중 “요하는”을 “필요로 하는”으로 한다.

제24조 중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를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로 한다.

제28조의2 중 “2023년”을 “2028년”으로 한다.

제33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도시정비과
입 안 자	과 장 성 명	도시정비과장 표 명 섭
	팀 장 성 명	도시정비1팀장 박 명 중
	담당자 성명 · 전화	이 상 옥 (031-8075-3442)

고양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 예정인 고양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고양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제28조의2).
-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제33조).

제27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3년 11월 17일

고양시 조례 제2712호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철근콘크리트·철골콘크리트·철골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 구조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지하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20년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철근콘크리트·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또는 철골 구조 건축물”을 “철근콘크리트·철골콘크리트·철골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 구조건축물”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현금납부액 산정기준 및 납부 방법 등) ①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의 부지 일부를 현금으로 납부를 요청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현금납부액 산정을 위해 시장에게 감정평가업자의 선정·계약을 요청하고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

치해야 한다.

② 시장은 감정평가가 끝난 경우 예치된 금액에서 감정평가 비용을 직접 지급한 후 나머지 비용은 사업시행자와 정산해야 한다.

③ 시장은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산정된 현금납부액을 착공일부터 준공 검사일까지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제1항 중 “법 제74조제2항제2호”를 “법 제74조제4항제2호”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중 “법 제15제1항”을 “법 제15조제1항”으로, “말한다)”를 “말한다. 다만, 공공재개발사업의 경우 공공시행자를 지정한 날 또는 공공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날 중 빠른 날을 말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도시정비과
입안자	과장 성명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팀장 성명	도시정비계획팀장 김종민
	담당자 성명·전화	이상범 031-8075-3432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안이유

-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경기도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공동주택 중 철근콘크리트·철골콘크리트·철골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 구조로 건축된 공동주택의 노후·불량 건축물 경과 기간을 규정함(제3조제2항제1호).
- 나. 반지하주택 밀집지역의 재개발사업을 유도하고자 지하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2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경우 노후·불량 건축물로 규정함(제3조제2항제1호).
- 다.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아닌 건축물 중 철근콘크리트·철골콘크리트·철골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 구조 건축물에 대한 노후·불량 건축물 경과 기간을 규정함(제3조제2항제2호가목).
- 라. 용적률 완화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의 부지 일부를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 현금납부액 산정기준 및 납부 방법 등을 규정함(제10조의2).
- 마.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의 조건에서 공공재개발사업의 경우 공공시행자를 지정한 날 등 기준일에 대하여 규정함(제28조제1항).

제27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3년 11월 17일

고양시 조례 제2713호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4조의4제5항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10조제5항 후단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16조 중 “운용할 수 있다”를 “운용한다”로 한다.

제18조의2 중 “2023년”을 “2028년”으로 한다.

제25조제1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35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도시정비과
입 안 자	과 장 성 명	도시정비과장 표 명 섭
	팀 장 성 명	도시재생관리팀장 김 태 영
	담 당 자 성명·전화	김 보 화 031-8075-3172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안이유

- 고양 성사 혁신지구 조성사업 추진 및 도시재생사업 종료에 따른 원활한 정산을 위하여 고양시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고양시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제18조의2).
-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제27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3년 11월 17일

고양시 조례 제2714호

고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도시정비과
입 안 자	과 장 성 명	도시정비과장 표 명 섭
	팀 장 성 명	소규모주택정비팀장 박 정 길
	담 당 자 성명·전화	홍 지 애 031-8075-3438

고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안이유

- 상위법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층수제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제26조).

제27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도시개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3년 11월 17일

고양시 조례 제2715호

고양시 도시개발 조례 전부개정조례

고양시 도시개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양시 도시개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기획·집행·청산 등에 관한 업무에 적용한다.

제2장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제4조(공청회 개최 등) ① 법 제7조제1항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것 외에 공청회

개최 14일 이전까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안의 주민이나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공청회가 개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의견을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견은 서면으로 제출하되 전자우편을 이용할 수 있다.

제5조(주민의견 반영 등) ① 시장은 공청회를 주관하는 자에게 공청회에서 청취된 의견과 제4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또는 공청회에서 청취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해야 하며, 의견 반영여부를 의견 제출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제3장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제6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시장은 법 제11조제4항 및 영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구역 특성에 맞게 사업구역별로 시행규정을 조례로 정해야 한다.

제7조(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제1종·제2종시설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된 안전진단 전문기관(이하 “진단검사자”라 한다)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진단검사자에게 준공검사를 받지 않을 수 있다.

1. 사업의 준공 전에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진단검사자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전부에 대하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실시한 경우
-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진단검사자에게 준공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 검사자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④ 준공검사 등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제4장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60조제1항 및 제61조제3항에 따라 고양시 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는 사업 시행단위에 따라 계정을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9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10조(특별회계의 재원) 특별회계는 법 제60조제2항(제3호 및 제6호를 제외한다)에 따른 재원으로 구성하며, 법 제60조제2항제7호에 따른 재원은 시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중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부담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경기도에 귀속되는 부담금이 있는 경우 그 부담금은 제외한다.

제11조(특별회계의 운용·관리) ① 특별회계의 재원은 법 제61조제1항, 영 제8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융자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예비비로 계상하고 남은 여유자금은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제12조(융자신청 등) ① 특별회계에서 융자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융자금의 1.3배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사업명, 사업기간 및 사업시행자
2. 융자금의 사용목적
3. 융자금액과 융자기간
4. 상환 방법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융자금액, 융자기간, 이율 및 상환 방법 등에 대하여 제14조에 따른 고양시 도시개발특별회계 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융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3조(융자조건) ①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 이율은 연 6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복리로 하되 제14조에 따른 고양시 도시개발특별회계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 기간 및 상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10년 후 일시상환
2.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 10년 후 일시상환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특별회계 자금을 융자 받은 자가 융자 받은 자금을 당초의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융자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④ 특별회계 자금을 융자 받은 자가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해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기일의 다음날부터 이를 납입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장이 시중은행 일반대출금 연체금리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납입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된 것 이외에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시와 특별회계 자금을 융자 받는 자가 체결하는 융자 약정에 따른다.

제14조(도시개발특별회계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특별회계

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고양시 도시개발특별회계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특별회계 자금의 운용 규모 및 집행 우선순위
2. 용자 여부 결정 및 용자 이율 등 용자계획
3. 용자목적 용도 이외의 사용 여부
4. 그 밖에 특별회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2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도시개발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도시개발 업무 담당 및 예산 업무 담당 부서의 과장·담당관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고양시의회 의원 2명 이내
2. 회계 또는 도시계획전문가 6명 이내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고, 심의·의결을 마치면 해당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5. 시장이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도시개발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20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제5장 보칙

제22조(관계 서류 등의 인계) 법 제7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완료하고 인계해야 할 서류 및 도면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류 및 도면(A3 축소 도면을 포함한다)
2. 준공 도면용 캐드(CAD)
3. 문서용 16밀리미터 롤 마이크로 필름(Roll Microfilm) 및 도면용 35밀리미터 롤(Roll Microfilm)
4. 문서 및 도면용 CD
5. 공간정보에 대하여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받은 공간정보 성과물
6. 그 밖에 기록보존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도시개발과
입 안 자	과 장 성 명	도시개발과장 유 제 학
	팀 장 성 명	도시개발팀장 이 종 선
	담 당 자 성명·전화	서 정 훈 031-8075-3163

고양시 도시개발 조례 전부개정조례

□ 제안이유

- 상위법인 「도시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체계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등을 명확히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주민공청회 개최에 따른 의견수렴 사항 등을 명확히 규정함(제4조).
- 나.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6월 30일까지로 규정함(제9조).
- 다. 특별회계 재원 중 개발부담금 항목에 대한 금액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제10조).
- 라. 특별회계 자금의 운용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제11조).
- 마.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신청 및 조건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함(제12조 및 제13조).
- 바. 특별회계 관리위원회 위원의 구성을 변경함(제15조).
- 사. 특별회계 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6조).

제27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도시계획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3년 11월 17일

고양시 조례 제2716호

고양시 도시계획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양시 도시계획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2023년”을 “2028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도시개발과
입 안 자	과 장 성 명	도시개발과장 유 제 학
	팀 장 성 명	도시개발팀장 이 종 선
	담 당 자 성명·전화	서 정 훈 031-8075-3163

고양시 도시계획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 예정인 고양시 도시계획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고양시 도시계획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제5조).

제27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3년 11월 17일

고양시 조례 제2717호

고양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양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2023년”을 “2028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도시개발과
입 안 자	과 장 성 명	도시개발과장 유 제 학
	팀 장 성 명	도시개발팀장 이 종 선
	담 당 자 성명·전화	서 정 훈 031-8075-3163

고양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 예정인 고양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고양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제5조).

제27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3년 11월 17일

고양시 조례 제2718호

고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고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고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운영”을 “운용”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라”를 “위하여”로, “운영”을 “운용”으로 한다.

제3조제2호 중 “15~30% 해당액”을 “15퍼센트부터 30퍼센트까지의 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7조 중 “2023년”을 “2028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도시개발과
입안자	과장 성명	도시개발과장 유 제 학
	팀장 성명	도시기반팀장 김 성 수
	담당자 성명·전화	김 정 택 031-8075-3144

고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 예정인 고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고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제7조).
-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제27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3년 11월 17일

고양시 조례 제2719호

고양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양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2023년”을 “2028년”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를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로 한다.

-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균형발전 관련 업무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도시개발과
입 안 자	과 장 성 명	도시개발과장 유 제 학
	팀 장 성 명	전략개발팀장 이 현 승
	담 당 자 성명·전화	조 명 식 031-8075-3059

고양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 예정인 고양시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고양시 균형발전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제9조).
-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제27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3년 11월 17일

고양시 조례 제2720호

고양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양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4조제2항”을 “제34조제3항”으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 중 “제34조제1항”을 “제34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3조 중 “법 제34조제1항”을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으로, “작성하여야”를 “작성해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한다.”를 “한다. 이 경우”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법 제34조제2항”을 “법 제34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발부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제34조제1항”을 “제34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제2호 중 “제5조”를 “제2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 차수는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위반을 첫 번째로 계산한다.

소관부서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입 안 자	과 성 장 명	보건행정과 김 정 인
	팀 성 장 명	보건행정팀장 이 정 훈
	담 당 자 성명·전화	김 정 은 031-8075-4004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2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일반행위가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위반 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 나. 일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적용일은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받은 날 그 부과 후에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3차 위반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3차 위반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2. 개별기준

위 반 내 용	근 거	부과금액(만원)		
		1차	2차	3차
가.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1,000	2,000	3,000
나.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1호	100	200	300
다.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2호	100	200	300

고양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안이유

- 상위법 「지역보건법」(‘23. 3. 28.)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위반행위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 및 정비하고자 함.(정부합동 평가지표)

□ 주요내용

- 가.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신설 및 정비함(제2조 및 별표).
- 나. 과태료 처분에 따른 이의신청서 및 이의제기통보서 서식을 정비함(별지 제8호서식 및 제9호서식).
-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조문을 정비함.

제27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고양시장이 동 환 인

2023년 11월 17일

고양시 조례 제2721호

고양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고양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입안자	과장 성명	보건행정과장 김 정 인
	팀장 성명	모자보건팀장 서 휘 라
	담당자 성명·전화	서 휘 라 031-8075-4026

고양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 제안이유

- 보건소 업무대행 인력이 전문 인력 채용을 위한 고용(임기제)형태로 전환되어 폐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이 조례를 폐지함.

제27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농업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3년 11월 17일

고양시 조례 제2722호

고양시 농업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양시 농업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정하는 것을” 을 “정함을” 으로 한다.

제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 ① 제5조의 시설을 사용하려고 하는 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설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의 설립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③ 부대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는 시장이 정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시설의 사용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농업 진흥을 위하여 영농상담, 영농교육, 농업관련 행사 등
3. 그 밖에 시장이 농업 진흥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중 “소요되는” 을 “드는” 으로, “노력하여야” 를 “노력해야”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농업정책과
입안자	과장 성명	농업정책과장 우 제 구
	팀장 성명	농업정책팀장 진 종 구
	담당자 성명 · 전화	김 부 군 031-8075-4235

고양시 농업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안이유

- 고양시 농업개발센터 내의 시설 사용료 부과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불필요한 직원 파견 규정을 삭제함(제6조제2항).
- 나. 농업기술센터의 시설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의 근거를 규정함(제6조의2).
-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제27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3년 11월 17일

고양시 조례 제2723호

고양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양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양시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을 “고양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으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시의 금고에 기금 계정을 설치해야 한다.

제17조제1항 중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를 “시의회에 제출해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도시농업과
입안자	과장 성명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팀장 성명	도시농업팀장 양희경
	담당자 성명·전화	주찬미 031-8075-4276

고양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안이유

-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금 사업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제3조의2).
- 나. 상위법에 맞춰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의회 제출기한을 정비함(제17조 제1항).
-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조문을 정비함.

제27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3년 11월 17일

고양시 조례 제2724호

고양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양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1천 평방미터”를 “1천제곱미터”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를 “안”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팀장으로 한다”를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로 한다.

제12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도시농업과
입 안 자	과 장 성 명	도시농업과장 이 영 애
	팀 장 성 명	도시농업팀장 양 희 경
	담 당 자 성명·전화	송 가 영 031-8075-4272

고양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안이유

- ‘행복텃밭 등 도시농업 육성 지원 사업 운영 관련 특정감사’ 결과 통보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지방보조금 지원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의 보조금 관련 규정을 삭제함 (제12조제2항).
-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조문을 정비함.

제27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3년 11월 17일

고양시 조례 제2725호

고양시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양시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이 경우,”를 “이 경우”로, “아니하도록”을 “않아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팀장으로 한다”를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과반수”를 각각 “과반수의”로, “개회”를 “개의(開議)”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본문 중 “등이 시 일원에서 직접”을 “등이”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취할”을 “할”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허위”를 “거짓”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8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0조 및 제22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연구개발과
입 안 자	과 장 성 명	연구개발과장 이 숙 향
	팀 장 성 명	가공기술팀장 정 현 덕
	담 당 자 성명·전화	정 현 덕 031-8075-4305

[별표]

가공시설의 사용료 산정기준

(제15조제1항 관련)

가공기자재의 취득가액(천원)	사용료(원)/1시간	비 고
100,000 이상 ~	1,880	※ 시간 입실부터 퇴실까지 소요시간
80,000 이상 ~ 100,000 미만	1,250	
60,000 이상 ~ 80,000 미만	1,000	
40,000 이상 ~ 60,000 미만	750	
20,000 이상 ~ 40,000 미만	500	
10,000 이상 ~ 20,000 미만	380	
5,000 이상 ~ 10,000 미만	250	
~ 5,000 미만	130	

고양시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안이유

- 다양한 가공수요에 발맞춰 공간과 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시설 사용대상을 확대하고, 사용료 산정 기준 및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사용대상자를 확대함(제12조제1항제1호).
- 나. 손해에 대한 시장의 면책 규정을 삭제함(제14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
- 다. 가공시설의 사용료를 가공기자재 취득가액으로 변경함(별표).
-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조문을 정비함.

제27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공유임야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3년 11월 17일

고양시 조례 제2726호

고양시 공유임야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양시 공유임야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호 중 “ ‘공유임야’ ” 를 “ “공유임야” ” 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 ‘녹지활용계획’ ” 을 “ “녹지활용계획” ” 으로, “제3장” 을 “제12조제1항” 으로 한다.

제2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원조성목적의 지방채 및 차입금
6. 그 밖의 수입금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한정하여 지출한다” 를 “다음 각 호와 같다” 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사유지 매입” 을 “토지 매입 및 부대경비” 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보호수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 매입 및 부대경비
6. 공원조성목적의 지방채 및 차입금 상환과 이자비용

제7조 중 “2023년” 을 “2028년” 으로 한다.

제8조를 삭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녹지과
입안자	과장 성명	녹지과장 김 종 천
	팀장 성명	공원조성팀장 서 재 섭
	담당자 성명·전화	박 희 숙 031-8075-4386

고양시 공유임야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안이유

- 공유임야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세입 및 세출에 관한 항목을 추가로 규정하고, 지속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고양시 공유임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공유임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세입 및 세출에 관한 항목을 추가로 규정함(제2조 및 제3조).
- 나. 고양시 공유임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제7조).
-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제8조).

제27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3년 11월 17일

고양시 조례 제2727호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 등에 따른 만 나이 정비) 고양시 조례의 본문, 별표 중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 등에 따라 만 나이 통일을 위해 별표 9와 같이 정비한다.

별표 8의 42란 다음에 43란부터 45란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9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8]

연번	부서명	자치법규명	해당조문	현행	개정	비고
43	여성가족과	고양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
44	하수행정과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9조제3항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9항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
45			별표 2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9항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

[별표 9]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 등에 따른 만 나이 정비 내역(제10조 관련)

연번	부서명	자치법규명	해당조문	현행	개정	비고
1	감사관	고양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별지 제9호서식	만 세	세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
2	행정지원과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21조제8항	만 4세 이하	4세 이하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
3	주민자치과	고양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만 18세 이상	18세 이상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
4		고양시 통·반 설치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연령 만 세	연령 세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
5	민원여권과	고양시 주부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제4조제1항	만 20세 이상	20세 이상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
6	재산관리과	고양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제4호	만 26세 이상	26세 이상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

연번	부서명	자치법규명	해당조문	현행	개정	비고
7	재산 관리과	고양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만26세 이상	26세 이상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
8			별지 제3호서식	만26세 이상	26세 이상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
9			별지 제5호서식	만26세 이상	26세 이상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
10	일자리 정책과	고양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2조제1호	만 19세 이상 만 24세 이하	19세 이상 24세 이하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
11			제4조	만 24세	24세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
12	여성가족과	고양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만 12세 이상 만 18세 미만	12세 이상 18세 미만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
13	노인복지과	고양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제2조제1호	만 60세 이상	60세 이상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

연번	부서명	자치법규명	해당조문	현행	개정	비고
14	노인복지과	고양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	만 60세 이상, 만 60세 미만	60세 이상, 60세 미만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
15			제17조	만 65세 이상	65세 이상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
16	아동보육과	고양시 아동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제2조제1호	만 7세 미만	7세 미만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
17	평생교육과	고양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만 50세 이상 만 65세 미만	50세 이상 65세 미만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
18	문화예술과	고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3항	만 18세 이하	18세 이하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
19			제7조제2항	만 18세 이하	18세 이하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
20	체육정책과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4조제4호 마목	만15세 이하	15세 이하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

연번	부서명	자치법규명	해당조문	현행	개정	비고
21	주택과	고양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18세 이상 39세 이하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
22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고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제8조제2항제6호	만 65세 이상	65세 이상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
23		고양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만 65세 이상	65세 이상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
24	덕양구보건소 건강증진과	고양시 어르신 안심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만 65세 이상	65세 이상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
25	일산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고양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호	만 60세 이상	60세 이상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
26	도시농업과	고양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	18세 이상 39세 이하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

연번	부서명	자치법규명	해당조문	현행	개정	비고
27	연구개발과	고양시 선인장전시관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조례	별 표	만 3세 이상 만 64세 이하, 만 3세 미만, 만 65세 이상	3세 이상 64세 이하, 3세 미만, 65세 이상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
28	수도행정과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제40조제1항 제11호	만 18세 미만	18세 미만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
29	하수행정과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5조제1항 제15호	만 18세 미만	18세 미만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안자:** 박현우 의원, 권선영 의원, 고덕희 의원(이종덕 의원 등 8명)

□ **제안이유**

- 「행정기본법」 및 「민법」의 개정(2023. 6. 28. 시행)에 따라,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표시를 하지 않아도 만 나이를 의미하게 되었음.
- 이에 자치법규 상의 “만” 용어를 삭제하여 나이 계산법 혼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해소하고 행정 분야의 만 나이 사용원칙을 확립하고자 함.
- 또한,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고양시 일부 조례의 인용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 등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제10조).
- 나.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 등에 따라 정비 내역 신설함(별표 8).

제27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3년 11월 17일

고양시 조례 제2728호

고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양시에서 범죄예방 및 선도 활동을 하는 자율방범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 (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을 구성하여 방범 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봉사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고양시 관내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 (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해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로 법 제12조에 따라 고양시 관내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임무) ① 방범대는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예방과 순찰 및 신고
2. 청소년 선도·보호, 미아·기아·가출인 보호 및 관계기관 연계
3. 재해·재난 발생 시 주민 구호 활동 지원
4. 교통 및 각종 기초질서 계도

5. 경찰서장·지구대장·파출소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
 6. 그 밖에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
- ② 연합대는 합동 순찰 및 합동 캠페인, 공익사업 등의 협력사업을 주관하고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지원, 지도할 수 있다.

제4조(경비 등의 지원) ① 시장은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활동한 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방범 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등
 2.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3. 방범초소·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4. 범죄예방 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5. 방범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등
 6. 그 밖에 방범대 등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연중 활동 실적을 평가하고, 활동 실적에 따라 다음 연도 지원금에 차이를 둘 수 있다.
- ③ 방범대 및 연합대가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

- ② 시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경찰서장에게 정기·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방법대 및 연합대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예산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포상) 시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방법대 및 연합대와 대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자율방법대의 예산 지원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안자:** 김학영 의원, 김미수 의원(최성원 의원 등 13명)

□ 제안이유

- 자율방범대는 지역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야간 취약 시간대에 순찰 활동을 하면서 범죄 신고, 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지원하는 봉사 조직임.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 가. 지원 대상 및 내용 규정(제4조제1항).
- 나. 지원 중단 및 포상 규정(제6조 및 제7조).

제27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3년 11월 17일

고양시 조례 제2729호

고양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양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시장은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 고양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안자:** 장예선 · 손동숙 · 권선영 의원(찬성의원: 이영훈 의원 등 13명)

□ 제안이유

- 고양시 금고운용 보고 사항을 고양시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 금고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가. 금고운용 보고 사항을 고양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요구 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 마련함(안 제17조).

제27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스톡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3년 11월 17일

고양시 조례 제2730호

고양시 스톡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톡킹을 예방하고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양시민의 안전 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톡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톡킹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스톡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톡킹 예방·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스톡킹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3. 스톡킹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스톡킹 근절을 위한 시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스톡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스톡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스토킹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스토킹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3. 피해자 심리상담 및 의료·법률·주거 지원사업
 4.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사업을 위한 공공기관과 민간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시설의 설치) 시장은 피해자 지원과 효과적인 피해 방지를 위하여 피해자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사법·수사기관 등 관련 기관, 단체 및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8조(2차 피해 방지 대책 수립) 시장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업무 수행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 관련자 교육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9조(비밀 유지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했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 **제안자:** 천승아 의원(찬성의원: 김운남 의원 등 17명)

□ 제안이유

- 최근 스토킹으로 인한 강력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야기되고 있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고양시민의 안전 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용어의 뜻을 정의함(제1조 및 제2조).
-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조).
- 다. 시행계획의 수립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 및 제5조).
- 라. 지원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 마.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
- 바. 2차 피해 방지 대책 수립과 비밀 유지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 및 제9조).

제27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장애인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고양시장이동환인

2023년 11월 17일

고양시 조례 제2731호

고양시 장애인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의 장애인등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로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 이를 보상하는 책임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등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사회활동 참여증진 및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전동보조기기 책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장애인등을 대상으로 전동보조기기 사고에 관하여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제3조(보험 가입)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을 위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등 중 전동보조

기기를 운행하는 모든 사람을 피보험자로 한다.

제4조(보험회사 선정)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5조(보험료 납부) 시장은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제6조(보험료 보장기준 등) 보험의 보장내용,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과 보험회사 간 계약 체결 시 따로 정한다.

제7조(보험금 청구 등) ① 장애인등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가 발생 하거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등이 직접 보험회사에 청구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8조(보험금 지원 제외) 장애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원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시 이외의 주소인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다른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장애인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 **제안자:** 신인선 의원(찬성의원: 최규진 의원 등 24명)

□ **제안이유**

- 이동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전동보조기기 지원 확대에 따라 전동보조기기 사고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음.
- 이에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하여 장애인 등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에 대해 규정함(제3조).
- 나. 보험회사 선정, 보험료 납부, 보험의 보장기준, 보험금 청구 등에 대해 규정함(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27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3년 11월 17일

고양시 조례 제2732호

고양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고양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양시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점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 및 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

과 설비를 말한다.

3. “사전점검”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 점검요원이 해당 시설물을 점검하여 편리하고 적절한 사용을 요구 또는 시정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4. “사후점검”이란 법에서 정하는 대상시설 사용승인 후 편의시설이 적법하게 유지관리 되고 있는지 점검하여 편의시설의 임의제거, 파손, 장애물 적치 등의 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5. “시설주”란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등이 일상 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

제4조(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 이외의 시설 소유주 또는 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시설은 법 제7조의 의무대상이 아닌 시설 중 민간이 소유한 공중이용시설로 한정한다.

제5조(설치비용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①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1. 편의시설 설치의 타당성

2. 공사비 내역서 및 설계도면의 타당성

③ 시장은 설치비용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6조(편의시설 설치신고 및 정산) ①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사람은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1. 편의시설 설치를 개시하였거나 완료한 경우
2. 편의시설 설치를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②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사람은 지원받은 후 1년 이내에 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10일 이내에 편의시설 설치비용 증빙서류 및 사진을 첨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7조(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하여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을 위한 시설의 효율적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고양시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설치 및 각 사업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제공
2. 시설주 및 설계자 등 관련자에 대한 상담
3. 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결정
4.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지도·점검
5. 그 밖에 기술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9조(편의시설 점검)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주가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완화를 위한 승인을 신청하면 사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③ 사후점검은 대상시설의 사용승인 후 1년 이상 2년 이내 대상시설에

대해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시기와 상관없이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점검요원) ① 사전점검은 관계 공무원 또는 지원센터 점검요원 등을 포함하여 3명 이내로 한다.

② 사후점검은 사전점검 외의 사람으로 관계 공무원 또는 지원센터 직원 중에서 3명 이내로 한다.

③ 점검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시설의 점검에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점검요원의 의무) ① 점검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해야 한다.

② 점검요원은 점검 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점검요원은 시설주에게 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점검에 협조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제12조(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해야 한다.

② 시설주는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제13조(점검결과의 보고) ① 점검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점검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점검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점검결과의 반영) ① 시장은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설주에게 통보하여 점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해

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주에게 통보하기 전에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양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상호명				면 적		
	구 분	임대, 자가			기타사항		
시설주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설치 지원 시설	대지위치	허가일	건물용도	편의시설 종류	설치위치		
지원희망시기	년 월 일						
「고양시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점검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 이후 일체 관리 등 책임은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있음.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시 설 주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한다)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신청인은 정보주체로서 개인정보의 삭제·정지 요구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지원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경기도 고양시장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 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항목 : 신청서 기재사항(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 기간 위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설주: (서명 또는 인)							

고양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 **제안자:** 최성원 · 고덕희 의원(찬성의원: 송규근 의원 등 12명)

□ **제안이유**

- 고양시 장애인등의 편의시설과 관련하여 기존 조례인 「고양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고양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고자 함.
- 편의시설 점검과 관련하여 사후점검 사항을 신설하여 장애인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제명을 「고양시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점검 조례」로 변경하고자 함.
- 나. 목적에 점검 내용을 추가함(제1조).
- 다. 사전 · 사후 점검에 대한 정의를 추가함(제2조).
- 라. 편의시설 점검요원, 점검결과의 보고 등을 규정함(제10조부터제14조까지).
- 마. 별지 제1호서식의 내용을 변경된 조례명 등으로 개정하고자 함(별지 제1호서식).

제27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3년 11월 17일

고양시 조례 제2733호

고양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20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고양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직업생활 및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고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 과정을 제외한 인권교육,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건강증진 교육, 자립생활기술 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이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제4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양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접근성 증진 등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확대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지원 및 관계기관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재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장애인의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등 특성을 고려하고,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계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법령에 따른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제5조(장애인 평생교육 재원 확보 및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2.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정보·기회 제공
3.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
4.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5.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관련 편의 제공
6.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은 관내 장애인 관련 기관·단체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능력향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설치·운영) ① 시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에게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을 설치·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장애인이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이용할 때 장애인의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등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의 접근 및 이용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제7조(장애인 평생교육 운영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고양시 장애인 평생교육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고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따른 고양시 평생교육협의회에서 심의·자문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및 발전방향 제시
2. 장애인 평생교육 추진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역 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기관 및 단체 상호 간 교육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시장은 위원회 위원을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장애인 1명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이내
2. 고양교육지원청 소속 교육전문직 공무원 또는 고양시 공무원
3. 장애인 또는 지역주민
4. 장애인 단체 대표 또는 종사자
5. 특수교육 및 평생교육 전문가
6.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기간이 지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관련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

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수시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4조(자문) 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단체 및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적용)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고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를 적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 **제안자:** 김해련 · 송규근 · 박현우 의원(찬성의원: 정민경 의원 등 14명)

□ 제안이유

- 「평생교육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들의 평생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고양시 장애인 평생교육지원에 대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제1조 및 제2조).
- 나. 시장의 책무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및 지원,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조부터 제6조까지).
- 다.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부터 제13조까지).

제27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3년 11월 17일

고양시 조례 제2734호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연 습 사 용 료(제9조 관련)

1. 시설별 연습사용료

○ 체육관, 수영장, 빙상장 등

(단위: 원)

시설별		월회원(자유이용)			일일회원(1회)						비 고
					개 인			단 체			
		일 반	군인, 청소년	어린이	일 반	군인, 청소년	어린이	일 반	군인, 청소년	어린이	
실내체육관 (보조포함)					3,000	2,500	2,000	2,500	2,000	1,800	
인라인스케이트장 (X게임장 포함)		20,000	18,000	15,000	1,000	800	500	800	600	400	
체력단련장 (헬스장)		50,000	40,000		4,000	3,500		3,500	3,000		
테니스장 (면당)	평일				6,000	5,000	4,000	4,000	3,500	3,000	
	토·공휴일				8,000	7,000	6,000	6,000	5,000	4,000	
다목적체육관					3,000	2,500	2,000	2,500	2,000	1,800	
수영장		60,000	50,000	40,000	4,000	3,500	3,000	3,500	3,000	2,500	
다이빙풀		72,000	60,000		5,000	4,000		4,000	3,500	3,000	
다이빙풀 (스킨스쿠버)					15,000						
다이빙풀 (프리다이빙)					10,000						
빙상장		70,000	65,000	55,000	4,000	3,500	3,000	3,500	3,000	2,500	
인공 압벽장	평일	45,000	40,000	35,000	2,000	1,500	1,000				
	토·공휴일				3,000	2,000	1,500				
전용배드민턴장		25,000	13,000	10,000	3,000	1,500	1,000				
스쿼시장, 라켓볼장		72,000	60,000	48,000	5,000	4,000	3,000	4,000	3,000	2,500	
파크골프장		45,000	30,000	30,000	3,000	2,000	2,000				18홀 장비대여료 1,000원
실내골프연습장		75,000	65,000	55,000	6,000	5,000	4,000				

시설별		월회원(자유이용)			일일회원(1회)						비 고
					개 인			단 체			
		일 반	군인, 청소년	어린이	일 반	군인, 청소년	어린이	일 반	군인, 청소년	어린이	
볼링장	평일				3,000	2,000					신발대여료 1,000원
	토·공휴일				3,500	2,200					
비 고 1. 감면적용은 일반사용료를 기준으로 개인, 단체를 모두 대상으로 함 2. 테니스장 야간(라이트시설) 사용료는 주간사용료의 30%를 가산함 3. 월회원은 1개월 이용(1일1회) 기준이며 토, 일·공휴일은 제외함(단, 시설별 별도로 규정하여 운영 가능) 4. 별도 월회원 명시 없는 종목의 경우 월회원으로 운영 가능하며 사용료는 1일사용료 × 24일 범위에서 적용할 수 있음 5. 일일회원 사용료는 토·일·공휴일의 경우 30% 범위에서 할증하여 적용할 수 있음 6. 월회원(강습회원 포함)에 한해 일일 개인사용료의 50%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음 7. 수영장 연습사용료(월회원)는 여성사용자(13~55세)에게 10%를 할인함 8. 별도 명시가 없는 경우 어린이는 일반요금의 50%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으며 단체는 20% 범위에서 할인 적용함. 9. 일 1회 2시간 내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별 특성에 따라 운영할 수 있음 10. 종목별 특성에 따라 개인강습(레슨) 운영이 가능하되 월회원으로 등록된(월자유사용료 납부) 회원에 한해 이용 가능함을 원칙으로 함 11. 감면 및 할인·할증 사용료의 십원단위는 절상함 12. 그 밖의 체육시설 사용료는 시설규모, 수준 등을 고려하여 상기 사용료를 준용할 수 있음 13. 고양시민 이외의 자는 사용료에 50% 가산함 ※ 고양시민이라 함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고양시로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며, 단체의 경우는 회원의 80% 이상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고양시로 되어 있어야 함 ※ 고양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또는 직장(학교)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은 고양 시민 사용료를 적용함											

○ 스크린골프연습장 1회 사용료 (단위: 원)

구 분	9홀	18홀
개인게임(1인)	8,000	13,000
팀게임(1인)	5,000	8,000

2. 그 밖에 스케이트 대여, 연마료 등 (단위: 원)

스케이트 대여료 (스피드, 피겨, 하키)	안전모 대여료	스케이트 연마료	스케이트 보관료(월)	
3,000	500	3,500	주3회	일반 20,000 선수 25,000
			주6회	일반 30,000 선수 35,000

○ 신규날의 경우 연마료는 100% 범위에서 할증 적용할 수 있음

3. 강습프로그램 월사용료(1일 1회 1시간 공사기준)

(단위: 원)

구 분	대 상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주6회
수영장	일 반	20,000	35,000	45,000	50,000	54,000	60,000
	청소년	15,000	30,000	38,000	43,000	45,000	50,000
	어린이	12,000	23,000	31,000	35,000	38,000	40,000
생존수영	일 반	25,000					
	청소년	22,000					
	어린이	20,000					
다이빙풀	일 반	24,000	42,000	54,000	60,000	65,000	72,000
	청소년	18,000	36,000	46,000	52,000	54,000	60,000
	어린이	15,000	28,000	37,000	42,000	46,000	48,000
빙상장	일 반	34,000	45,000	52,000	58,000	62,000	70,000
	청소년	31,000	42,000	48,000	55,000	59,000	65,000
	어린이	26,000	35,000	43,000	47,000	50,000	55,000
다목적 체육관 및 에어로빅실	일 반	15,000	28,000	36,000	40,000	45,000	50,000
	청소년	13,000	22,000	30,000	36,000	42,000	46,000
	어린이	12,000	20,000	28,000	34,000	40,000	44,000
스피닝	일반		45,000	60,000			
	청소년		36,000	48,000			
테니스장	일 반	11,000	21,000	32,000	42,000	52,000	62,000
	청소년	9,000	18,000	26,000	33,000	40,000	47,000
	어린이	8,000	15,000	23,000	30,000	37,000	44,000
보조경기장	일 반	15,000	28,000	36,000	40,000	45,000	50,000
	청소년	13,000	22,000	30,000	36,000	42,000	46,000
	어린이	12,000	20,000	28,000	34,000	40,000	44,000

구 분	대 상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주6회
인공암벽장	일 반	15,000	28,000	36,000	40,000	45,000	50,000
	청소년	13,000	22,000	30,000	36,000	42,000	46,000
	어린이	12,000	20,000	28,000	34,000	40,000	44,000
실내골프연습장	일 반	50,000	75,000	100,000	125,000	150,000	175,000
	청소년	44,000	65,000	88,000	109,000	130,000	153,000
	어린이	34,000	50,000	68,000	84,000	100,000	118,000
	스크린	200,000	220,000	240,000	260,000	280,000	300,000
스쿼시장 라켓볼장	일 반	24,000	42,000	54,000	60,000	65,000	72,000
	청소년	18,000	36,000	46,000	52,000	54,000	60,000
	어린이	15,000	28,000	37,000	42,000	46,000	48,000

비 고	1. 다목적 체육관의 사용료 란은 에어로빅장 시설의 사용료에 적용되며 체육관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종목들의 사용료임 2. 사용료 할증·할인 - 토·일·공휴일 포함된 프로그램은 50% 범위에서 할증할 수 있음 - 프로그램별 운영사항(시간강사 단가, 기구시설비 등)에 따라 50% 범위에서 할증할 수 있음 - 단체, 군인은 20%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음 3. 30분추가 시 해당 강습사용료는 나누어 합산한 금액으로 산출 적용. 다만 헬스이용은 강습시간을 포함하여 2시간 기준에서 초과이용 시 적용함 4. 강습 프로그램은 강습위주, 강습+개인연습 등의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일의 50% 이상 강습이 포함될 경우는 사용료의 30% 범위에서 할증할 수 있음 5. 수영장 강습프로그램 월사용료는 여성사용자(13~55세)에게 10%를 할인함 6. 생존수영은 주1회 적용이며, 횡수 추가시 요금을 합산 적용함 7. 고양시민 이외의 자는 사용료에 50% 가산함 ※ 고양시민이라 함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고양시로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며, 단체의 경우는 회원의 80% 이상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고양시로 되어 있어야 함 ※ 고양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또는 직장(학교)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은 고양 시민 사용료를 적용함
--------	--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안자: 김운남 · 공소자 · 이종덕 의원(찬성의원: 임홍열 의원 등 5명)

□ 제안이유

- 관내 공공배드민턴장의 지속적인 운영 어려움으로 인해 요금 인상을 통한 고양시 배드민턴협회의 운영 안정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시민들의 원활한 시설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별표 2의 전용배드민턴장 월회원(자유이용), 일일회원(1회) 연습사용료와 비교 내용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고자 함(별표 2).

제27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3년 11월 17일

고양시 조례 제2735호

고양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들의 사기 진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장”이란 제1군단 제301경비연대 제12관리대대 예비군훈련장을 말한다.
2. “예비군”이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시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① 고양시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이 차량 운행비용 지원신청을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차량 임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및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 **제안자:** 김수진 · 박현우 · 권용재 의원(찬성의원: 김미경 의원 등 19명)

□ 제안이유

- 고양시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해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들의 사기진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제1조 및 제2조).
- 나. 예비군 부대가 차량을 임차하여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경우 차량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3조).

제27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3년 11월 17일

고양시 조례 제2736호

고양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양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고양시의회가 추천하는 고양시의회 의원 2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안자: 건설교통위원장

□ 제안이유

- 재난관리의 효율성 및 관계기관 간 원활한 협조를 위해 고양시 안전관리위원회에 고양시의회 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고양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에 2명의 고양시의원을 포함하도록 규정함 (제3조제2항).

제27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3년 11월 17일

고양시 조례 제2737호

고양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고양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양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및 시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고 주택 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노력해야 한다.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① 시장은 고양시에 주소를 두고 고양시 소재 다음 각 호의 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에게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소화기

2. 단독경보형감지기

③ 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은 「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제5조에 따른다.

제4조(지원신청) 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대상자 및 지원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결정) 시장은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 **제안자:** 권선영 · 김민숙 · 장예선 의원(찬성의원: 공소자 의원 등 16명)

□ **제안이유**

- 「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개정으로 경기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대상자가 취약계층에서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 소유자로 확대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비용 지원 대상자를 수급자 등 취약계층에서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 소유자로 확대함(제3조).
- 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 및 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 및 제5조).

제27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3년 11월 17일

고양시 조례 제2738호

고양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양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발생한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르거나 차단할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
 - 나.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의 인증을 받은 제품
 - 다.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지정받은 KS인증기관으로부터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하여 인증을 받은 제품
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제8호를 제1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특수학교
9.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1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11.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병설유치원 포함)
12.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13.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
1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제7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안자:** 임홍열 · 김민숙 의원(찬성의원: 권용재 의원 등 8명)

□ **제안이유**

- 매해 감소하는 화재 횟수 대비 대형화재 발생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각 방연마스크의 유형별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안전용품을 비치함으로써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고자 조문 일부를 수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방연마스크”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여 각 유형의 방연마스크 고유의 장단점을 이해하여 적절한 장소에 비치함으로써 화재 발생시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방연마스크의 정의를 확대함(제2조).
- 나. 법적효력이 있는 인증제품을 비치함으로써 제품의 성능 및 신뢰도를 확보함(제2조).
- 다. 방연마스크의 비치시설을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생명을 보호함(제3조).

제27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3년 11월 17일

고양시 조례 제2739호

고양시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양시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2023년” 을 “2028년”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안자:** 이해림 · 임홍열 · 안중돈 의원(찬성의원: 최규진 의원 등 13명)

□ **제안이유**

- 원활한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신청사건립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제17조).

제27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3년 11월 17일

고양시 조례 제2740호

고양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공매, 사기 기망행위로 인한 부당한 계약 등의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양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 주택임차인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전세피해”란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공매, 사기 기망행위로 인한 부당한 계약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다만,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보증금의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전세사기피해자”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요건을 갖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을 말한다.
4. “전세피해 확인서”란 전세피해자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서 발급한 확인서를 말한다.

5.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란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위하여 보증기관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보증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고양시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전세피해를 당한 사람 또는 전세사기피해자(이하 “전세피해 임차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세피해 임차인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② 시장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고양시의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 ‘고양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보호대책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고양시 전세사기피해자 보호 대책’(이하 “보호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의 보호대책에 전세피해자와 전세사기피해자를 모두 포함하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 ③ 시장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지원계획 수립 시 제5조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제7조(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시장은 고양시에 거주하거나 거주할 예정으로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2.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상담지원

3.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복지지원
4.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상담지원
5.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세 납입 기한 연장
6.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
7. 시장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무주택자인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가. 새로운 주택입주 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나. 긴급주거지원 주택입주 시 이사비 지원
 - 다. 전세피해 임차인등에 대한 월세 지원
8. 그 밖에 전세피해와 전세사기피해의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9조(의회 보고) 시장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의 지원 현황 및 실태를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시행된 날부터 2025년 7월 1일까지 존속한다. 다만, 이 조례의 존속기간 중 법의 효력이 종료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이 조례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전세피해 임차인등으로 인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이 조례를 적용한다.

고양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 **제안자:** 최규진 · 박현우 의원(찬성의원: 김운남 의원 등 10명)

□ **제안이유**

- 고양시 전세사기 등의 전세피해가 발생한 경우 주택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양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 및 전세사기 피해 방지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제1조).
- 나. 주택, 전세피해, 전세사기피해자 등 관련 용어를 정의함(제2조)
- 다.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제4조).
- 라. 실태조사, 보호대책의 수립 및 시행,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사업 등을 규정함(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27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3년 11월 17일

고양시 조례 제2741호

고양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운전자”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 중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운전면허 자진반납”이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의 효력 취소를 목적으로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4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시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지원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 차량 식별 스티커 제작·배부

2.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
3.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보유 및 반납 현황
2.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
3. 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운전자에 대한 혜택의 발굴
4. 그 밖에 고령운전자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은 한 번으로 한정하며, 「고양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고양시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③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7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지원금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2. 재정지원을 받은 자진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양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7조 및 제14조를 각각 삭제한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통합처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	------	------	----

운 전 면 허 반 납 (취 소) 신 청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연 락 처	휴대전화		전화번호	
	도로명주소				

※ 면허 반납 시 ‘모든 종류 (원동기 포함)’ 의 ‘운전면허’ 가 ‘전부 취소’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_____ (서명 또는 인)

※ 반납 즉시 면허가 취소되고, 한번 취소된 후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으며, 취소일 기준 1년 후 다시 취득이 가능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_____ (서명 또는 인)

※ 반납한 면허증은 사용하실 수 없으며, 해당 부서에서 즉시 폐기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_____ (서명 또는 인)

반 납 보 상 신 청			
보상 신청 여부	[] 예 [] 아니오	보상내용이 고양페이10만원권임을 확인	[] 예 [] 아니오

신청인 성명 : 20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신청인의 신분증(운전면허증)
참고사항	1. 신청하는 곳: 고령운전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2. 신청인의 범위: 고령운전자 본인만 신청 가능

개인정보 이용 · 제공 동의서

-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아래의 이용목적으로 이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위 통합조회 신청을 할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항목	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도로명주소 면허번호, 연락처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통합신청 접수·처리	주민등록 말소 전까지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의 제3자 이용·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따라 아래의 이용목적으로 개인정보를 경찰청에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면허반납 처리를 할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개인정보를 제공하는자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보유기간
경찰청	성명, 생년월일, 도로명주소 면허번호, 연락처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위한 면허상태 조회 및 면허취소 처리	주민등록 말소 전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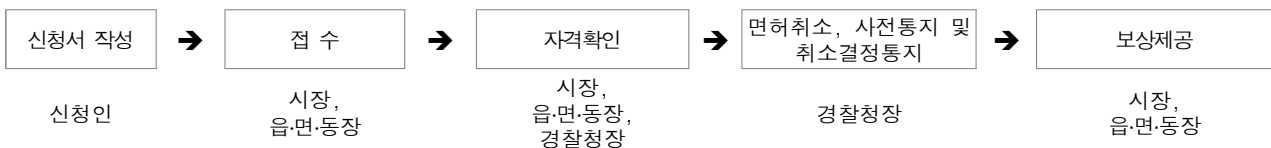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고양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 **제안자:** 장예선 · 김해련 · 김민숙 의원(찬성의원: 이영훈 의원 등 13명)

□ **제안이유**

- 고양시에 거주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을 통하여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제1조부터 제3조까지).
- 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제4조).
- 다. 고령운전자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 라. 재정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제27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3년 11월 17일

고양시 조례 제2742호

고양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지원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의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말한다.
2. “사후관리계획”이란 도시재생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확장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확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사후관리계획 수립)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이 다시 쇠

퇴하지 않도록 방지하고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사후관리계획을 사업 완료 이후 6개월 이내에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 이후 중장기 주요 목표 및 성과
2. 생활권자 주민과 주민협의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의 의견수렴
3. 민간 참여 확대 방안
4. 도시쇠퇴 방지 대책
5. 모니터링 방식 및 평가체계 구축(평가단 구성 등)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하여 수립해야 한다.

제6조(지원)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재생 기반 시설의 설치·정비
2.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3. 마을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
4. 마을 거점시설 조성 및 운영 사업
5.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평가단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모니터링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담당 업무 국장을 단장으로 하고,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되 도시재생 및 완료사업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③ 평가단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사람은 전임 평가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④ 단장은 평가단 업무를 총괄해야 하며, 부득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호선(互選)으로 선정하고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평가단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 ⑥ 시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해 평가단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게 할 수 있으며, 평가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8조(평가단의 기능)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기능을 한다.

- 1.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
- 2. 주민협의체 등 지역공동체 활동 사항
- 3. 사후관리계획에 따른 모니터링 및 평가
- 4.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수당 등 지급) 평가단의 조사·확인 활동 및 평가단 관련 회의에 참석한 관련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업에 대하여 지도·감독이 필요한 경우 보고하도록 요청하거나,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점검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보고)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고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해야 한다.

② 시장은 모니터링 및 평가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 **제안자:** 이해림 · 김미경 · 김민숙 의원(찬성의원: 임홍열 의원 등 10명)

□ **제안이유**

-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대상으로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모니터링 및 평가를 통하여 사업의 효과를 지속·극대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제1조).
- 나. 사후관리계획 수립을 규정함(제5조).
- 다.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을 규정함(제6조).
- 라.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함(제7조).
- 마. 평가단의 기능에 관한 규정함(제8조).

제27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3년 11월 17일

고양시 조례 제2743호

고양시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 및 약물의 오남용을 방지해 고양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 사용 시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했거나 변질·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의 수거 등을 위하여 고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폐의약품의 배출, 수집, 운반 및 처리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폐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④ 시장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해 의약품
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불용의약품의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

② 시민은 폐의약품 배출 시 시 소재 약국 또는 보건소 등에 설치된 폐
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배출해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③ 시민은 폐의약품 배출 시 폐의약품 배출방법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액
상제제의 의약품이 하수구로 유입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수집) ① 보건소장은 폐의약품 수거용기 설치 및
홍보 등으로 폐의약품 수거 거점 역할을 수행하며, 시 소재 약국의 약사
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에 협
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거장소를 시민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 설
치 및 시민 안내 등의 필요한 조치를 실시해 불용의약품 등을 철저히
수집해야 한다.

③ 시 약사회는 약국을 통한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폐의약품 수집
· 보관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회원을 독려하는 등 협조할 수 있다.

제6조(폐의약품의 운반·처리) ① 시장은 수집된 폐의약품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해 신속히 소각 처리해야 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

② 보건소장은 폐의약품 등의 처리와 관련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총괄
· 조정 역할을 하고, 폐기물관리부서에서는 약국·보건소 등에 수집된
폐의약품을 운반·처리하는 역할을 한다.

③ 시장은 폐의약품 수거 결과를 매년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제7조(포상) 시장은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
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

□ **제안자:** 고덕희 의원(찬성의원: 고부미 의원 등 16명)

□ **제안이유**

-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고양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용어의 뜻을 정의함(제1조 및 제2조).
- 나. 시장 및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조 및 제4조).
- 다. 불용의약품 등의 수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 라. 불용의약품 등의 운반·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 마.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

제27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3년 11월 17일

고양시 조례 제2744호

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충전사업소,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소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5.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로부터 반경 10미터 이내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안자:** 김운남 · 김희섭 · 권용재 의원(찬성의원: 천승아 의원 등 5명)

□ 제안이유

- 주유소, 가스충전소, 전기차충전소 등 화재사고의 위험이 높은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흡연으로 인한 화재사고를 방지하고 시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철 역사 출입구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아래의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함(제4조).
- 주유소, 가스충전소, 전기차충전소 등
 -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로부터 반경 10m 이내

제27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저소득층 성인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고양시장이 동 환 인

2023년 11월 17일

고양시 조례 제2745호

고양시 저소득층 성인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암치료 부작용으로 탈모 증상을 겪는 저소득층 성인 암환자의 자존감 회복을 돕고 항암치료 의지를 강화하기 위해 가발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암환자”란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의료비 지원 대상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항암치료 부작용으로 탈모증세가 심한 암환자가 외모 변화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4조(가발구입비 지원) 시장은 암환자의 치료 의지를 높이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가발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신청일 현재 고양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18세 이상인 암환자

2.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3. 항암치료 중 탈모가 심하여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사람

제6조(지원내용) 시장은 지원대상에게 가발구입비의 100분의 90까지 지급하며 지원금액은 60만원을 넘지 않는다. 이 경우 지원은 한 번으로 한정한다.

제7조(지원신청 등) ① 가발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별지 서식의 가발구입비 지원신청서, 가발구입 영수증 및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신청서를 접수하면 제출된 서류를 확인하여 지원 대상인지를 결정한다.

제8조(지원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가발구입비를 지원 받은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가발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금액을 환수해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
2. 제8조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람
3. 의사소견서 등 지원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사람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람

제10조(적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안내」 지침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발구입비 지원신청서

지원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상병명		상병코드	
	진단기관		최초진단일	
	지급계좌번호		은행/예금주	
	의료보장	☐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의료급여수급자		
신청인 (대리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관계	
신청내용	총구입비	본인부담금		신청금액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보건소 담당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수조치 시 안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반드시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해야 하며 형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환수에 대한 안내 여부 ☐ 예 ☐ 아니오

환수조치 시 동의 동의자 :

(서명)

위와 같이 암환자 가발구입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보건소장 귀하

고양시 저소득층 성인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 **제안자:** 박현우 · 이종덕 · 신인선 의원(찬성의원: 권선영 의원 등 8명)

□ 제안이유

- 항암치료의 부작용인 탈모 증상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는 저소득층 성인 암환자에게 가발구입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환자의 자존감을 높이고 치료 의지를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제1조 및 제2조).
- 나. 가발구입비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을 규정함(제5조부터 제8조까지).
- 다. 지원된 비용의 환수 조건을 규정함(제9조).

제27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3년 11월 17일

고양시 조례 제2746호

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제4항 본문 중 “만 4세”를 “4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안자:** 고덕희 의원(찬성의원: 김학영 의원 등 7명)

□ **제안이유**

- 근무시간 외 근무를 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 수당 대신 연가를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제10조의2).
- 나. 「행정기본법」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고양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친 고양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3년 11월 17일

고양시 규칙 제1174호

고양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시간) ① 문화시설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시설 누리집, 누리소통망(SNS) 등에 알려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3조(사용 신청) ① 「고양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문화시설을 사용 또는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문화시설 사용(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시장은 시설 관리상 필요한 경우 신청인과 협의하여 허가 내용을 변경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시장은 사용 신청이 둘 이상 접수되면 신청서의 접수 순서에 따라

승인해야 한다.

제4조(특별 부대시설의 설치)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특별 부대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 부대시설 설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 다음 날까지 설치 가능 여부를 서면 또는 구두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감면 신청) 조례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문화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가 등 공공단체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문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신청) ① 조례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문화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반환을 결정하면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에 반환금을 입금해야 한다.

제7조(대장의 작성)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문화시설 사용 신청 접수 허가 대장과 별지 제6호서식의 문화시설 특별 부대시설 대장을 갖추고 기록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규칙은 각각 폐지한다.

1. 고양시 문예회관 사용 조례 시행규칙
2. 고양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소관부서		문화예술과
입 안 자	과 장 성 명	문화예술과장 서 은 원
	팀 장 성 명	문화시설팀장 김 경 희
	담 당 자 성명·전화	김 성 순 031-8075-3418

[별표 1]

문화시설 운영시간 및 휴관일(제2조 관련)

시설명	운영시간	휴관일	비고
고양시 어린이박물관	오전10시~오후6시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고양영상미디어센터	오전9시~오후6시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	
고양생활문화센터 (아람, 호수, 어울림)	(평일)오전10시~오후9시 (토요일)오전10시~오후6시	일요일, 월요일 및 법정 공휴일	
고양시 음악창작소	오전10시~오후9시	일요일, 월요일 및 법정 공휴일	
고양시 문예회관	오전9시~오후10시	일요일, 월요일 및 법정 공휴일	
고양문화의집	(평일)오전10시~오후9시 (토요일)오전10시~오후6시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	

※ 각 시설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변동될 수 있음

※ 법정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

[별지 제1호서식]

문화시설 사용(변경)신청서				
사 용 자	단체명 (대표자명)		성별	☐ 남자 ☐ 여자
	주소		연락처	
	이메일		사용인원	
신 청 내 용	행사명 및 사용 목적			
	사용 기간	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사용 시설	기본 시설		
		부대 시설		
	무대 연습 (해당사항 있는 경우)	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변경 사항	변경 사유		
		변경 전		
		변경 후		
첨 부	·행사계획서, 공연자등록증, 공연신고확인증 등			
「고양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 시설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특별 부대시설 설치 신청서			
단체명 (대표자명)		성별	☐ 남자 ☐ 여자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행사명			
시설 내용			
시설 사유			
「고양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문화시설 특별 부대시설 설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문화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					
단체명 (대표자명)		성별	☐ 남자 ☐ 여자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행사명					
사용 시설	기본 시설				
사용 기간	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감면 사유					
비고					
첨부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감면 대상 증명서류				
「고양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문화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신청서					
단체명 (대표자명)		성별	☐ 남자 ☐ 여자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행사명 또는 강좌명					
사용 시설	기본 시설				
	부대 시설				
사용(수강) 기간	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반환 사유					
반환 금액					
입금 계좌	○은행명(예금주명): ○계좌번호:				
「고양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문화시설 사용 신청 접수 및 허가 대장

접수		사용 물건명	신청자		사용 목적 또는 행사명	입장 예정 인원	협조 (조회) 내용	허가 기간	특별부대 시설개요	사용료	허가		비고	결재	
번호	월일		주소	성명							번호	월일		담당	팀장

[별지 제6호서식]

문화시설 특별 부대시설 설비 대장

번호	신청 및 지시일자	설비 물건명	신청자		사용기간	특별설비 시설개요	시설 기간	시설비 계산액	시설일시	원상회복 일시	사용허가 번호	비고
			주소	성명								

고양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안이유

- 고양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문화시설별 운영시간에 대하여 규정함(별표 1).
- 나. 사용 신청 방법, 절차 및 서식을 규정함(제3조 및 별지 제1호서식).
- 다. 특별 부대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 및 별지 제2호서식).
- 라. 사용료의 감면 방법 및 서식을 규정함(제5조 및 별지 제3호서식).
- 마. 사용료의 반환 방법 및 서식을 규정함(제6조 및 별지 제4호서식).

고양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친 고양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3년 11월 17일

고양시 규칙 제1175호

고양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고양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입 안 자	과 장 성 명		보건행정과장 김 정 인
	팀 장 성 명		모자보건팀장 서 휘 라
	담 당 자 성명·전화		서 휘 라 031-8075-4026

고양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 제안이유

- 「고양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폐지에 따라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이 규칙을 폐지함.

고양시 노점판매대 운영 규정 전부개정훈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3년 11월 17일

고양시 훈령 제412호

고양시 노점판매대 운영 규정 전부개정훈령

고양시 노점판매대 운영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양시 노점판매대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7호에 따라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노점 등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점 판매대를 효율적으로 정비·관리함으로써 고양시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보행자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점판매대”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길벗가게, 버스카드 충전소, 구두수선소를 말한다.
2. “영업자”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노점판매대를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보조 영업자”란 시의 승인을 받고 영업자와 함께 노점판매대를 운영하는 영업자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또는 1인 가구 등의 사유로 시에서 고용이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원”이란 영업자의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해 시의 승인을 받고 영업자에게 고용되어 일정한 보수를 받고 근무하는 보조 영업자 이외

의 사람을 말한다.

5. “길벗가게”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7호에 따른 점용물의 종류 중 노점을 말한다.
6. “버스카드 충전소”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7호에 따른 점용물의 종류 중 버스표판매대를 말한다.
7. “구두수선소”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7호에 따른 점용물의 종류 중 구두수선대를 말한다.
8. “도로”란 시가 관리하는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9.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에 사용하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시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노점판매대에 적용한다.

제4조(운영 허가) ① 노점판매대를 운영하려는 사람은 「도로법」에 따라 시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노점판매대 운영을 허가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노점판매대 영업자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노점판매대의 운영 기간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운영 허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연장은 최초 기간을 포함하여 3년까지로 하되, 3년마다 재심사를 통해 허가기준에 적합한 사람은 재연장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길벗가게에 대해서는 신규 허가 및 재연장 허가를 할 때 재산조회를 실시해야 한다.

⑥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규정 이외의 조건을 부여하거나 노점판매대 운영 허가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⑦ 영업자는 제6항에 따른 운영 허가 조건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따라야 한다.

제5조(운영 주체 등) ① 영업자는 노점판매대를 직접 운영하되, 보조 영업자 1명과 같이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 영업자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증빙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영업자가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노점판매대를 직접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조원 신청서를 제출하여 연 30일 이내에 보조원 1명을 고용할 수 있다. 다만, 영업자가 중증질환, 입원치료 등 정상적으로 영업을 이어나가기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보조원의 고용 기간을 도로점용허가의 남은 기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영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도로점용허가를 승계하여 노점판매대를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 허가 기간은 사망한 영업자의 허가 기간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승계하여 노점판매대를 운영하는 배우자를 영업자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승계를 받은 영업자가 사망한 경우 다시 승계를 할 수 없다.

제6조(도로점용허가 장소 및 금지구역 등) ① 노점판매대는 보도에 설치해야 하며, 노점판매대의 폭을 제외한 유효보도폭이 최소 2미터 이상 되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도로에는 노점판매대를 설치할 수 없다.

1. 버스 정류장 및 택시 승강장 양쪽 끝 2미터 이내 지점
2. 횡단보도부터 2미터 이내 지점
3. 지하철, 지하도, 지하상가 출입구부터 3미터 이내 지점

제7조(설치 기준 등) ① 영업자는 노점판매대를 설치하는 경우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구조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장소에 직접 설치해야 하며, 규격과 색상, 모양 등은 시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 노점판매대는 판매대 규격으로 점용 면적을 산출해야 한다.

③ 영업자는 노점판매대 앞·좌·우 각각 80센티미터의 규격으로 가림

막(지붕 끝에서 대각선으로 설치한 경우가 아닌 수직으로 설치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가림막을 사용하려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가림막 사용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영업자는 가림막의 면적을 도로점용허가 면적에 포함하여 점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④ 영업자는 제3항에 따른 가림막을 설치·사용하는 경우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점자블록을 가려서는 안 된다.

⑤ 시장은 가림막을 사용하지 않은 영업자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면적 내에서만 판매하기 어려운 과일, 채소 등을 판매하는 경우 기존 노점판매대와 접한 앞·좌·우 각각 80센티미터의 면적을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자는 추가 면적을 도로점용허가 면적에 포함하여 점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⑥ 영업자는 제3항에 따라 가림막을 사용하는 경우 또는 제5항에 따라 추가 면적을 신청하는 경우 추가점용 면적을 앞·좌·우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해당 연도에는 면적 변경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변경을 신청할 수 없다.

⑦ 영업자는 도시미관 개선사업 등 공익목적을 위한 사업 및 보행자 통행 방해 등으로 노점판매대 운영 허가 장소 변경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노점판매대를 변경된 장소로 이전하여 운영해야 한다.

⑧ 영업자는 노점판매대를 임의로 변형하거나 무단으로 교체해서는 안 된다.

제8조(노점판매대 판매품목 등) ① 길벗가게에서는 의류, 잡화, 도서류, 음반, 과일, 채소, 스낵 등을 판매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

1. 주류 및 법령상 유통하거나 판매가 금지된 물품
2. 주변 상가와 품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민원을 일으킬 수 있는 품목
3. 그 밖에 시가 제한하는 물품 등

② 버스카드 충전소는 버스 이용객의 편의를 줄 수 있는 교통카드, 신문, 잡지, 복권, 스낵 등의 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물

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

1. 주류 및 법령상 유통하거나 판매가 금지된 물품

2. 그 밖에 도로점용허가 목적에 위반되는 물품

③ 구두수선소에서는 구두를 수선하거나 닦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구두 티켓 및 상품권 판매 등 다른 업종과 관련된 영업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 영업자는 도로점용허가 시에 승인받은 품목에 한정하여 판매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하게 판매품목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판매품목 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판매할 수 있다.

제9조(영업자의 의무) ①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노점판매대를 성실히 보존·관리해야 하며, 시설물이 파손되었거나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영업자가 부담하여 원상복구할 것

2. 노점판매대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것

3. 노점판매대의 파손 또는 훼손으로 도시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보수할 것

4. 노점판매대 외면에는 포스터나 현수막 등 광고물을 부착하지 않을 것

5. 점용목적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점용 기간 중 도로를 파손했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할 것

6. 공익목적과 도시미관을 위하여 영업자에게 행위를 제한하였을 경우 이에 성실히 따를 것

7. 승인을 받은 보조 영업자 또는 보조원 외의 사람에게 노점판매대 영업을 하게 하지 않을 것

8. 실태조사에 성실히 따를 것

9. 노점판매대 내의 지정된 장소에 교부받은 노점판매대 영업자증명서와 도로점용 허가증을 항상 게시할 것

② 영업자는 성실히 노점판매대 영업에 종사해야 하며, 무단으로 30일 이상 폐점해서는 안 된다. 다만, 질병 등의 사유로 별지 제6호서식의 휴업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연 30일 이내로 휴업할 수 있

으며, 중증질환, 입원치료 등 정상적으로 영업을 이어나가기 불가능한 경우에는 미리 승인을 받아 도로점용허가의 남은 기간 범위에서 휴업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영업자는 영업장소 주변의 불법 노점행위(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상에서 좌판 등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근절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불법 노점행위 및 불법 노점상과 연계된 불법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 영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 및 카드단말기 설치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⑤ 영업자는 노점판매대에 부과되는 각종 도로점용료, 전기요금 등 각종 부과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10조(위생관리 등) 영업자는 노점판매대의 위생을 청결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스낵 등 식품은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오물 등으로 오염 또는 변질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
2. 노점판매대 영업 개시 전·후로 주변과 외관은 항상 깨끗이 청소하여 청결하게 유지할 것
3. 쓰레기는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에 담거나 밀봉하여 관리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것

제11조(안전관리 등) ① 영업자는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예방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영업자는 가스, 전기 등을 사용하는 경우 정기적인 안전 점검 및 사용상의 안전 수칙 등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③ 영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2조(실태조사) 시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반기별로 노점판매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13조(시정명령)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1. 도로점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노점과 관련된 불법단체(합법성을 인정받지 못한 단체를 말한다) 구성·가입 등으로 시 노점정책에 방해되는 행위를 한 경우
3. 보행자의 통행 불편 및 도로 이용자의 불편 등이 발생한 경우
4. 제5조에 따라 시의 승인을 받지 않고 보조원을 둔 경우
5. 제7조제1항에 따른 노점판매대를 점용허가장소 외 다른 장소로 무단으로 이전한 경우
6. 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가림막 규정을 위반한 경우
7.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면적을 초과하여 외부에 물건을 진열·적치·설치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다만, 제7조제5항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면적까지는 제외한다)
8. 제7조제7항에 따른 공익목적을 위한 사업(도시미관 개선사업 등을 말한다) 및 보행자 통행 방해 등으로 노점판매대 장소 변경 통보에 따르지 않은 경우
9. 제7조제8항에 따른 노점판매대를 임의로 변형하거나 무단으로 교체한 경우
10. 제8조에 따른 허용 판매 품목 이외에 물품을 판매하거나 무단으로 품목을 변경한 경우
11. 제9조에 따른 영업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12. 제10조에 따른 노점판매대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제14조(운영 허가 취소) 시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점판매대의 운영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도로점용허가를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
2. 노점판매대 운영의 권리나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임대 등을 한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4. 영업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다만, 배우자가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노점판매대 도로점용료(연납)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6. 노점판매대 재연장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7. 제13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 지정한 기한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8. 동일한 위반행위로 연 3회의 시정명령을 받았거나 시정명령 횟수가 연간 총 4회를 초과하는 경우
9. 그 밖에 공익목적 등 도로점용허가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제15조(노점판매대 철거 등) ①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한 노점판매대(영업을 위해 점용 받은 면적의 외부 적치물을 포함한다)를 자진 철거해야 하며 점용했던 도로를 원상복구해야 한다.

1. 「도로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2. 제14조에 따라 노점판매대의 운영 허가가 취소된 경우
 3. 허가 기간이 지난 후 본인의 과실로 도로점용허가 연장을 받지 못한 경우
- ② 시장은 영업자가 제1항에 따른 노점판매대의 철거를 지정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 및 「행정절차법」에 따라 강제 철거한다.
- ③ 영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노점판매대가 철거된 경우 어떠한 보상이나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노점판매대를 강제 철거한 경우 노점판매대를 폐기하거나 매각처분할 수 있다.

제16조(사무위임) ① 시장은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노점판매대 도로점용허가, 관리 업무, 행정처분 등의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② 관할 구청장은 이 규정에 따라 노점판매대를 관리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훈령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시장은 이 훈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이 훈령 시행 전에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3조(길벗가게, 버스카드 충전소 및 구두수선소에 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당시 시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길벗가게, 버스카드 충전소 및 구두수선소를 운영 중인 사람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노점판매대 운영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노점판매대 가림막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가림막 설치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일 전까지 종전의 제6조제2호에 따른다.

제5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5조의2, 제14조 및 별표에 따른다.

소관부서		도로정책과
입안자	과장 성명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팀장 성명	건설행정팀장 조승현
	담당자 성명·전화	김준혁 031-8075-2844

노점판매대 영업자증명서

A-1

허가기간: 2000년 00월 00일 ~ 2000년 00월 00일

영업자 사진		보조 영업자 사진	
[성 명]		[성 명]	
[생 년 월 일]		[생 년 월 일]	
취급품목 :			
장 소 :			

※ 본 노점판매대는 양도하거나 임대할 수 없습니다.

영업자 준수사항

1. 이 노점판매대는 허가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2. 이 노점판매대는 영업자 또는 보조 영업자 등 고양시의 승인을 받은 사람 외에 대리로 영업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3. 허가 사항 및 영업권을 제3자에게 양도, 임대할 수 없습니다.
4. 승인 없이 노점판매대를 교체 또는 노점판매대 외관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임의의 장소로 이전할 수 없습니다.
5. 고양시 노점판매대 운영 규정에 따라 금지하는 품목을 취급해서는 안 되며 사전에 승인 받은 품목만 취급해야 합니다.
6. 그 밖의 도로점용허가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고양시

[별지 제2호서식]

노점판매대 보조 영업자 신청서				
영업자	성 명		관리번호	
보조 영업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영업자와의 관계				
「고양시 노점판매대 운영 규정」 제5조에 따라 고양시 노점판매대 보조 영업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영업자 (서명 또는 인) 보조 영업자 (서명 또는 인) 고 양 시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영업자 신분증 사본 2. 보조 영업자 신분증 사본 3. 보조 영업자 신청 사유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별지 제3호서식]

노점판매대 보조원 신청서				
영업자	성 명		관리번호	
보조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영업자와의 관계				
보조원 신청 사유				
보 조 원 신 청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고양시 노점판매대 운영 규정」 제5조에 따라 고양시 노점판매대 보조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영업자 (서명 또는 인) 보조원 (서명 또는 인) 고 양 시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영업자 신분증 사본 2. 보조원 신분증 사본 3. 보조원 신청 사유 증빙서류(진단서, 입원확인서 등)				

노점판매대 가림막 사용 신청서				
영업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관리번호	
			연락처	
「고양시 노점판매대 운영 규정」 제7조에 따라 가림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영업자 (서명 또는 인) 고 양 시 ○○○구청장 귀하				
준수사항 1. 가림막은 도로점용 면적에 포함하여 도로점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2. 가림막은 지붕 끝에서 대각선이 아니라 수직으로 설치하여 사용해야 한다. 3. 가림막 사용을 신청하면 해당 연도에는 사용 취소를 신청할 수 없다.				
첨부서류 1. 영업자 신분증 사본				

노점판매대 휴업 신청서

영업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휴업사유	
관 리 번 호			연 락 처	
휴 업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고양시 노점판매대 운영 규정」 제9조에 따라 노점판매대 휴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영업자 (서명 또는 인) 고양시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영업자 신분증 사본 2. 휴업 신청 사유 증빙서류(진단서, 입원확인서 등)			

[별지 제7호서식]

실태조사표				
관리번호			노점판매대 위치	
형 태			취급품목 연 락 처	
영업자	성 명		주 소	
	생년월일		(거주지)	
	가족사항		주거형태	자가, 전세, 월세
보조 영업자	성 명		연락처	

점검항목	세부내용	점검결과	비고
1. 노점판매대 설치 현황	☐ 영 업 자: ☐ 관리번호: ☐ 설치위치:		
2. 도로점용료 체납 현황	☐ 도로점용료 체납 현황		
3. 노점판매대 외부 변형 및 설치 위치 변경사항	☐ 점용허가장소 외 다른 장소로 무단으로 이전한 여부		
	☐ 노점판매대 외부의 임의 변형 여부		
	☐ 가림막 준수 여부		
4. 무단 방치 및 타인 영업 현황	☐ 영업자 등 외에 타인 영업 여부		
	☐ 30일 이상 미 영업 여부		
5. 노점판매대 외부에 물건 적치 등 현황	☐ 점용면적 이외에 외부에 물건 적치 여부 등		
6. 영업자 의무 준수사항 등	☐ 노점판매대 외부에 무단으로 광고물 부착 여부		
	☐ 노점판매대 파손 및 훼손된 상태로 방치 여부		
	☐ 노점판매대 영업자증명서 및 도로점용 허가증 게시 여부		
7. 판매품목 현황	☐ 주류 및 법령상 유통하거나 판매가 금지된 물품 판매 행위		
	☐ 승인된 품목 이외에 무단으로 변경하여 판매를 하는 행위		
8. 그 밖의 사항	☐ 인근 상가와와의 마찰 여부		
	☐ 그 밖의 위반 사유		

조사일시 : 년 월 일

조 사 자 : 소속

직/성명 :

고양시 노점판매대 운영 규정 전부개정훈령

□ 제안이유

- 길벗가게를 관리하는 데 있어 현실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 「고양시 도로상 영업시설물 관리지침」상의 구두수선소 및 버스카드 충전소 운영·관리를 통합하여 규정함으로써 고양시의 노점판매대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조 및 제2조).
- 나. 노점판매대 운영 허가기준 사항을 규정하며, 재연장 기간을 3년으로 축소함(제4조).
- 다. 노점판매대 운영 주체 및 보조원 고용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제5조).
- 라. 노점판매대 도로점용허가 장소 및 금지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 마. 노점판매대 가림막 사용 여부, 초과 점용 면적 및 도시미관 개선사업 등으로 장소 변경 통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
- 바. 노점판매대의 무단 폐점 기간을 30일로 축소하여 규정함(제9조).
- 사. 실태조사를 반기별로 실시하도록 규정함(제12조).
- 아. 노점판매대 시정명령 및 운영 허가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제13조 및 제14조).
- 자. 사무위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제16조).
- 차. 노점판매대의 운영 시 필요한 신청 서식을 신설함(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7호서식까지).

도시계획시설(중로1-1호선 외 1개소] 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411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중로1-1호선 외 1개소]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고 양 시 장

1.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411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 명 칭: 중로1-1호선 외 1개소 사업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 성 명 :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

라.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결정	중로	1	1	20	보조간선	2,216	대로 2-13	대로 2-13	일반 도로	국토부고시 제2009-1260호 (09.12.30)	
금회시행	중로	1	1	3	보조간선	33.0	향동동 411번지	향동동 411번지	일반 도로		사업면적: 133.5㎡
결정	소로	2	2	8~10	국지 도로	456	중로 1-1	중로 2-8	일반 도로	국토부고시 제2011-155호 (11.04.20)	
금회시행	소로	2	2	2.2	국지 도로	59.2	향동동 411번지	향동동 411번지	일반 도로		사업면적: 114.9㎡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준공예정일: 2024.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별첨”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관계인 주소, 성명 : “바” 항과 동일

아.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다, 바” 항과 같음

2. 관계도면 : “계재생략” (열람장소에 비치)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연번	위치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1	향동동	411	대	9,724.0	248.4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 (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3호) 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328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3호)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고 양 시 장

1.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328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3호) 사업
- 명칭: 대화버스공영차고지 전기버스 충전소 구축사업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성명 : 고양시장(버스정책과)

라.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결정	3	자동차 정류장	공 영 차고지	대화동 2328 일원	22,939.0	고양시고시 제2007-300호 (2007. 8. 6.)	
시행	3	자동차 정류장	공 영 차고지	대화동 2328	22,106.0		신축 연면적 467.59㎡ (전기차 충전시설)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3.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별첨”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관계인 주소, 성명 : “바”항과 동일

아.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2. 관계도면 : “계재생략”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권리
합 계		1필지								
1	대화동	2328	차	22,106	22,106	고양시				

고양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변경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성석동 제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지구 경미한 변경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고 양 시 장



1. 사 업 명: 「성석동 제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2. 사업시행자: 일산동구청장
3. 사업지구현황:

사업지구명	사업위치	사업지구 현황 변경전		사업지구 현황 변경후		비고
		필지 수	면적(㎡)	필지 수	면적(㎡)	
성석동 제2지구	성석동 643번지 일원	462	262,714	445	255,856	필지수:(감)17필지 면적(㎡):(감)6,858㎡

4. 토지조서: [붙임] “사업지구 토지 지번별 조서” 참조

5. 기타

가.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나. 기타 관계서류는 해당 사업지구의 지적소관청에서 비치하고 있으니,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6. 연락처: 일산동구청 (☎031-8075-6212)

붙임 지번별 조서 부.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제12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도로명주소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고 양 시 장

○ 도로명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덕산2길 19 등 19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일	
별 지 참 조				
종전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변경일	변경사유
별 지 참 조				
폐지 도로명주소	폐지일자		폐지사유	
별 지 참 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토지정보과(☎8075-3096~9)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3. 11. 17.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에 따라 새로이 도로명주소를 부여하였습니다.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고양 도시관리계획(삼송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 공고

고양시 삼송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련도서를 공람합니다.

2023. 11. 17.
고 양 시 장



□ 고양 삼송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결정 조서 : 변경없음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조서 : 변경없음
 - 가. 용도지역·지구 및 구역에 관한 결정 조서 : 변경없음
 -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변경없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
 - 1) 주택건설용지 변경 : 변경
 - 가) 단독주택용지, 공동주택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주상복합용지 : 변경없음
 - 나) 준주거용지 : 변경
 - 준주거용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번호	가구		획지					비고
		가구 번호	면적(㎡)	획지번호		위치	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	-	24,119.7	-		-	24,119.7		
변경	준주거1	-	11,621.1	-	1	동산동 339대	11,621.1	5,810.0	획지분할
					2			5,811.1	
기정	준주거2	-	1,125.2	-		삼송동 305대 일원	1,125.2		
기정	준주거5	-	1,657.4	-		오금동 577-2대	1,657.4		
기정	준주거6	-	1,626.6	-		오금동 577-3대	1,626.6		
기정	준주거7	-	8,089.4	-		원흥동 616대	8,089.4		

■ 준주거용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준주거1	■ 획지분할 - 당초: 11,621.1㎡ - 변경: 획지1 5,810.0㎡/획지2 5,811.1㎡	■ 동고양세무서 청사신축에 따른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고려하여 획지를 2개로 분할하고자 함

2) 상업용지,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 : 변경없음

나.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 등에 관한 도시
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1) 단독주택용지, 공동주택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준주거용지(SR4), 주상복합용지,
일반상업용지, 도시지원시설, 자동차관련시설, 학교, 공공청사, 종합의료시설, 커뮤니티
센터,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급시설, 종교시설, 주유소, 체육시설 : 변경없음

2) 준주거용지(SR3) : 변경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기정	변경		
SR3	준주거1, 준주거2, 준주거5, 준주거6	준주거2, 준주거5, 준주거6	용도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설소 및 단란주점, 고시원, 장의사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 ■ 노유자시설중 영유아 보육시설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 제외)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380% 이하
			최고층수	-
			배치 및 건축선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에 의한다.
			형태 및 외관	■ 지붕 및 옥탑 등 ① 건축물의 지붕이 평지붕으로 계획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되도록 권장한다. - 테라스 혹은 정원의 개념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가로경관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실외기, 안테나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옥상녹화를 통해 녹지공간을 최대화하여 생태/친환경도시형성에 일조한다. ② 건축물의 지붕이 경사지붕으로 계획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되도록 권장한다. - 경사지붕의 물매는 세로:가로 = 1:3이상의 범위로 하며, 실외기 설치공간을 계획시 반드시 고려한다. - 계단실, 물탱크실 등 옥탑구조물 설치시 가급적 경사지붕 안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며 부득이하게 노출되는 경우는 경사지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③ 건물의 옥상에 태양열 집열판을 설치하여 태양열 에너지의 활용을 권장한다.
				■ 담장, 대문, 계단 등 - 준주거시설용지내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인접 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 보행등의 안전성을 위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달리할 수 있다. ■ 옥외광고물 및 야간경관 - 옥외광고물, 야간경관에 관한사항은 제Ⅳ편의 경관부문 시행지침의 기준을 따른다.
			색채	■ 건축물 색채에 관한사항은 제Ⅳ편의 경관부문 시행지침의 기준을 따른다.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SR3	SR5	준주거1, 준주거2, 준주거5, 준주거6	준주거1	용도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설소 및 단란주점, 고시원, 장의사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 ■ 노유자시설중 영유아 보육시설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 제외)	■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건축연면적의 70% 이상 설치) ■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설소 및 단란주점, 고시원, 장의사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 ■ 노유자시설중 영유아 보육시설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 제외)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380% 이하	
				최고층수	-	
				배치 및 건축선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에 의한다.	
				형태 및 외관	■ 지붕 및 옥탑 등 ① 건축물의 지붕이 평지붕으로 계획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되도록 권장한다. - 테라스 혹은 정원의 개념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가로경관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실외기, 안테나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옥상녹화를 통해 녹지공간을 최대화하여 생태/친환경도시형성에 일조한다. ② 건축물의 지붕이 경사지붕으로 계획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되도록 권장한다. - 경사지붕의 물매는 세로가로 = 1:3이상의 범위로 하며, 실외기 설치공간을 계획시 반드시 고려한다. - 계단실, 물탱크실 등 옥탑구조물 설치시 가급적 경사지붕 안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며 부득이하게 노출되는 경우는 경사지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③ 건물의 옥상에 태양열 집열판을 설치하여 태양열 에너지의 활용을 권장한다.	
					■ 담장, 대문, 계단 등 - 준주거시설용지내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 보행등의 안전성을 위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달리할 수 있다. ■ 옥외광고물 및 야간경관 - 옥외광고물, 야간경관에 관한사항은 제Ⅳ편의 경관부문 시행지침의 기준을 따른다.	
				색채	■ 건축물 색채에 관한사항은 제Ⅳ편의 경관부문 시행지침의 기준을 따른다.	

다. 기타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 기타사항

1. 공람 및 의견제출 기간: 공고일로부터 15일간(2023. 11. 17. ~ 2023. 12. 2.)
 2. 공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고양시청 도시계획정책관(031-8075-3082)
 3. 관련도서 : 게재생략(공람장소에 비치)
 4. 기타사항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본 공람(안)은 최종 결정고시 된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도로명주소 신규고시 조서						
연번	종 전 주 소	도 로 명 주 소	도로명주소표시일	도로명고시일	부 여 사 유	비 고
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덕산2길 19 (덕은동)	2023-11-17	20190531	고유지명 및 위치예측성 고려	
2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설문동 314-47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문월길 173 (설문동)	2023-11-17	20090824	문봉동과 파주 대원리에서 한 자석을 활용하여 도로명 부여	
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199-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랑로546번길 16-12 (동산동)	2023-11-17	20100126	화랑로 시점에서 4500m에 위치한 도로	
4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설문동 194-8, 194-19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진천길 48 (설문동)	2023-11-17	20090824	인근 하천명칭 인용	
5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2138-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531번길 28 (성석동)	2023-11-17	20100126	고봉로 시점에서 5310m에 위치한 도로	
6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2138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531번길 30 (성석동)	2023-11-17	20100126	고봉로 시점에서 5310m에 위치한 도로	
7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1318-2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송산로 457-56 (덕이동)	2023-11-17	20081010	행정동 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8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지영동 60-5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공릉천로355번길 174 (지영동)	2023-11-17	20100126	공릉천로 시점에서 3550m에 위치한 도로	
9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지영동 60-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공릉천로355번길 170 (지영동)	2023-11-17	20100126	공릉천로 시점에서 3550m에 위치한 도로	
1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475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꽃마음로 34 (향동동)	2023-11-17	20180612	유래 및 위치예측성	
11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 570-1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송산로192번길 50 (구산동)	2023-11-17	20100126	송산로 시점에서 1920m에 위치한 도로	
1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396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동로 218 (향동동)	2023-11-17	20180525	고유지명 및 위치 예측성 고려	
1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1045-9, 1045-12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로 205 (덕이동)	2023-11-17	20081010	법정동 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고양시 도로명주소 변경고시 조서						
연번	지번 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변경일	변경 사유	비고
		해 당 없 음				

고양시 도로명주소 변경고시 조서						
연번	종전 주소(지번주소)		도로명주소(새주소)	관련지번 변경일	변경 사유	비고
	변 경 전	변 경 후				
		해 당 없 음				

고양시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폐지일	폐지 사유	멸실건물 고시일자	법정동	비 고
1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로 205	2023-11-13	건물 신축	2011-07-29	덕이동	
2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로 209-9	2023-11-13	건물 신축	2011-07-29	덕이동	
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송산로192번길 48	2023-11-13	건물 신축	2011-07-29	구산동	
4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송산로192번길 50	2023-11-13	건물 신축	2011-07-29	구산동	
5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맥절길 302-208	2023-11-14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 편입에 따른 말소	2011-07-29	장항동	
6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진천길 48	2023-11-16	건물 신축	2011-07-29	설문동	

고양 도시관리계획(삼송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 공고

고양시 삼송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련도서를 공람합니다.

2023. 11. 17.

고 양 시 장

□ 고양 삼송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결정 조서 : 변경없음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가. 용도지역·지구 및 구역에 관한 결정 조서 : 변경없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변경없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

1) 주택건설용지 변경 : 변경

가) 단독주택용지, 공동주택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주상복합용지 : 변경없음

나) 준주거용지 : 변경

■ 준주거용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번호	가구		획지					비고
		가구 번호	면적(㎡)	획지번호		위치	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	-	24,119.7	-		-	24,119.7		
변경	준주거1	-	11,621.1	-	1 2	동산동 339대	11,621.1	5,810.0 5,811.1	획지분할
기정	준주거2	-	1,125.2	-		삼송동 305대 일원	1,125.2		
기정	준주거5	-	1,657.4	-		오금동 577-2대	1,657.4		
기정	준주거6	-	1,626.6	-		오금동 577-3대	1,626.6		
기정	준주거7	-	8,089.4	-		원흥동 616대	8,089.4		

■ 준주거용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준주거1	■ 획지분할 - 당초: 11,621.1㎡ - 변경: 획지1 5,810.0㎡/획지2 5,811.1㎡	■ 동고양세무서 청사신축에 따른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고려하여 획지를 2개로 분할하고자 함

2) 상업용지,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 : 변경없음

나.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 등에 관한 도시
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1) 단독주택용지, 공동주택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준주거용지(SR4), 주상복합용지,
일반상업용지, 도시지원시설, 자동차관련시설, 학교, 공공청사, 종합의료시설, 커뮤니티
센터,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급시설, 종교시설, 주유소, 체육시설 : 변경없음

2) 준주거용지(SR3) : 변경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기정	변경		
SR3	준주거1, 준주거2, 준주거5, 준주거6	준주거2, 준주거5, 준주거6	용도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 고시원, 장의사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 ■ 노유자시설중 영유아 보육시설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 제외)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380% 이하
			최고층수	-
			배치 및 건축선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에 의한다.
			형태 및 외관	■ 지붕 및 옥탑 등 ① 건축물의 지붕이 평지붕으로 계획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되도록 권장한다. - 테라스 혹은 정원의 개념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가로경관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실외기, 안테나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옥상녹화를 통해 녹지공간을 최대화하여 생태/친환경도시형성에 일조한다. ② 건축물의 지붕이 경사지붕으로 계획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되도록 권장한다. - 경사지붕의 물매는 세로:가로 = 1:3이상의 범위로 하며, 실외기 설치공간을 계획시 반드시 고려한다. - 계단실, 물탱크실 등 옥탑구조물 설치시 가급적 경사지붕 안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며 부득이하게 노출되는 경우는 경사지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③ 건물의 옥상에 태양열 집열판을 설치하여 태양열 에너지의 활용을 권장한다. ■ 담장, 대문, 계단 등 - 준주거시설용지내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 보행등의 안전성을 위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달리할 수 있다. ■ 옥외광고물 및 야간경관 - 옥외광고물, 야간경관에 관한사항은 제Ⅳ편의 경관부문 시행지침의 기준을 따른다.
			색채	■ 건축물 색채에 관한사항은 제Ⅳ편의 경관부문 시행지침의 기준을 따른다.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SR3	SR5	준주거1, 준주거2, 준주거5, 준주거6	준주거1	용도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 고시원, 장의사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 ■ 노유자시설중 영유아 보육시설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 제외)	■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건축연면적의 70% 이상 설치) ■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 고시원, 장의사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 ■ 노유자시설중 영유아 보육시설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 제외)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380% 이하	
				최고층수	-	
				배치 및 건축선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에 의한다.	
				형태 및 외관	■ 지붕 및 옥탑 등 ① 건축물의 지붕이 평지붕으로 계획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되도록 권장한다. - 테라스 혹은 정원의 개념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가로경관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실외기, 안테나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옥상녹화를 통해 녹지공간을 최대화하여 생태/친환경도시형성에 일조한다. ② 건축물의 지붕이 경사지붕으로 계획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되도록 권장한다. - 경사지붕의 물매는 세로:가로 = 1:3이상의 범위로 하며, 실외기 설치공간을 계획시 반드시 고려한다. - 계단실, 물탱크실 등 옥탑구조물 설치시 가급적 경사지붕 안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며 부득이하게 노출되는 경우는 경사지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③ 건물의 옥상에 태양열 집열판을 설치하여 태양열 에너지의 활용을 권장한다. ■ 담장, 대문, 계단 등 - 준주거시설용지내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 보행등의 안전성을 위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달리할 수 있다. ■ 옥외광고물 및 야간경관 - 옥외광고물, 야간경관에 관한사항은 제Ⅳ편의 경관부문 시행지침의 기준을 따른다.	
				색채	■ 건축물 색채에 관한사항은 제Ⅳ편의 경관부문 시행지침의 기준을 따른다.	

다. 기타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 기타사항

1. 공람 및 의견제출 기간: 공고일로부터 15일간(2023. 11. 17. ~ 2023. 12. 2.)
 2. 공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고양시청 도시계획정책관(031-8075-3082)
 3. 관련도서 : 게재생략(공람장소에 비치)
 4. 기타사항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본 공람(안)은 최종 결정고시 된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